

연구보고 2013-23

#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개선방안 연구

- 유아반을 중심으로

이정립 이미화 구자연



## 머 리 말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에 대한 주장은 비단 보육 관련자뿐 아니라 여론에서 도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특히 교사 대 아동비율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이다. 교사 한 명이 맡고 있는 아동이 많을수록, 아동의 안전에 대한 문제와 개별적이고 온정적인 상호작용에서 간과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2014년부터 어린이집에서 원칙적으로 초과보육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론의 의견과 위와 같은 정부 정책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정책연구소는 어린이집 영아 반편성 기준 연구와 3~5세 유아를 위한 반편성 기준 연구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과 관련하여 만 0~5세 영유아 연령을 모두 아우르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만3~5세 유아 연령대에 초점을 두어, 유아 반편성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2014년부터 적용될 초과보육 금지 조치를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근거를 제시하고, 어린이집 반편성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어린이집의 원장님들, 만3~5세를 담당하고 계신 유아반 교사 분들, 심층면접에 참여해 주신 원장님과 교사 분들, 자문으로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관련 전문가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영



# 차 례

요약 .....	1
I. 서론 .....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2. 연구내용 .....	11
3. 연구방법 .....	11
4. 선행연구 .....	16
II. 연구의 배경 .....	20
1. 어린이집 유아반 운영 현황 .....	20
2.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지침 .....	24
3. 국외 반편성 사례 .....	29
III. 유아반 편성 기준에 대한 요구 분석 .....	34
1. 유아반 운영 및 유아반 교사의 업무 실태 .....	34
2.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에 대한 의견 .....	41
3. 초과보육에 대한 조정 요구 및 의견 .....	50
4. 동일연령반 및 혼합반 편성 .....	57
5. 동년도 출생을 기준으로 한 반편성 원칙 .....	58
6. 소결 .....	60
IV. 정책 제언 .....	62
1. 어린이집 유아반 편성 기준 개선 방향 .....	62
2. 어린이집 유아반 편성 기준 개선 방안 .....	63
참고문헌 .....	69
부록 .....	72
부록 1. 연도별 반편성 지침(1991~2013년) .....	74
부록 2. 어린이집 원장용 설문지 .....	81

부록 3. 어린이집 교사용 설문지 .....	84
부록 4.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기타 업무시간(유아보육시간 제외) .....	87

## 표 차례

〈표 I-3-1〉 응답기관의 특성 .....	12
〈표 I-3-2〉 응답교사의 특성 .....	13
〈표 I-3-3〉 원장용 및 교사용 설문지의 문항 구성 영역 및 내용 .....	15
〈표 I-3-4〉 심층면담조사 대상 .....	15
〈표 I-3-5〉 자문회의 참여자 배경 특성 .....	16
〈표 II-1-1〉 2012년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운영 현황(2012. 12) .....	20
〈표 II-1-2〉 연령과 설립유형에 따른 보육아 수(2012) .....	21
〈표 II-1-3〉 보육 영유아 연령 분포(2012) .....	22
〈표 II-1-4〉 정원 초과 어린이집 비율 .....	23
〈표 II-1-5〉 보조교사 인건비 기준 .....	23
〈표 II-1-6〉 누리과정 운영반 담임교사 외 추가 인력 현황(복수응답) .....	24
〈표 II-2-1〉 연도별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 관련 지침(1999~2013년) .....	25
〈표 II-2-2〉 어린이집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 인정범위 .....	27
〈표 II-2-3〉 어린이집 혼합반 운영 원칙 및 교사 대 아동비율 .....	27
〈표 II-2-4〉 연도별 반편성 기준 원칙(2007~2013년) .....	28
〈표 II-2-5〉 2013년도 어린이집 연령별 반편성 기준 .....	29
〈표 II-3-1〉 미국유아교육협회(NAEYC)의 월령별 집단크기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 ..	29
〈표 II-3-2〉 미국 보건복지부의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 .....	30
〈표 II-3-3〉 미국 소아과학회 및 공중보건 협회의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 ..	30
〈표 II-3-4〉 영국 교육부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정안(2013) .....	31
〈표 II-3-5〉 일본 유치원, 보육소, 유보제휴형 인정어린이원의 직원 배치 기준 ..	31
〈표 III-1-1〉 어린이집 개원시각 및 현원의 70% 이상이 등원한 시각 .....	34
〈표 III-1-2〉 어린이집 폐원시각 및 현원의 70% 이상이 하원한 시각 .....	35
〈표 III-1-3〉 20~30% 아동이 남아있을 경우 보육 운영 방법 .....	36
〈표 III-1-4〉 종일제 및 반일제 운영 여부 .....	36
〈표 III-1-5〉 1일 평균 총 업무시간 .....	37
〈표 III-1-6〉 1일 평균 유아보육 업무시간 .....	38

〈표 III-1- 7〉 1일 평균 유아보육을 제외한 기타 업무시간	38
〈표 III-1- 8〉 당직근무 횟수	39
〈표 III-1- 9〉 주말근무 횟수	40
〈표 III-2- 1〉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3세반(원장)	41
〈표 III-2- 2〉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3세반(교사)	42
〈표 III-2- 3〉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4세반(원장)	44
〈표 III-2- 4〉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4세반(교사)	44
〈표 III-2- 5〉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5세반(원장)	45
〈표 III-2- 6〉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5세반(교사)	46
〈표 III-2- 7〉 연령별 적정 집단크기	47
〈표 III-2- 8〉 보조교사 1인 추가배치 시의 연령별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	48
〈표 III-2- 9〉 보조교사 1인 추가배치 시의 연령별 집단크기	48
〈표 III-2-10〉 정교사 2인 배치 시의 연령별 집단크기	49
〈표 III-3- 1〉 3세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원장)	51
〈표 III-3- 2〉 3세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교사)	51
〈표 III-3- 3〉 4세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원장)	52
〈표 III-3- 4〉 4세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교사)	52
〈표 III-3- 5〉 5세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원장)	53
〈표 III-3- 6〉 5세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교사)	54
〈표 IV-3- 7〉 비담임 보육교사의 추가배치 시 선호하는 형태(원장, 교사)	55
〈표 III-4- 1〉 동일연령반과 혼합반 편성에 대한 의견(원장, 교사)	57
〈표 III-4- 2〉 혼합반 편성 시 적절한 혼합연령	57
〈표 III-4- 3〉 혼합반 운영 시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원장, 교사)	58
〈표 III-5- 1〉 1, 2월생 아동의 반편성에 대한 의견(원장, 교사)	59
〈표 III-5- 2〉 1, 2월생 아동의 동년도 출생아반 편성에 대한 만족도(원장, 교사)	59

## 그림 차례

[그림 II-3-1] OECD 회원국의 교사 1인당 최대 규정 유아 수(만3~5세) .....	32
[그림 III-2-1] 연령별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교사, 원장) .....	47
[그림 III-2-2] 연령별 적정 집단크기(교사, 원장) .....	47

##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1> 연도별 반편성 지침(1991~2013년) .....	73
<부록 표 4-1> 1일 평균 보육활동 준비 시간 .....	86
<부록 표 4-2> 1일 평균 문서작성 시간 .....	87
<부록 표 4-3> 1일 평균 청소 및 보육실 환경 관리 시간 .....	88
<부록 표 4-4> 1일 평균 담임업무 외의 담당업무 시간 .....	89
<부록 표 4-5> 1일 평균 비정기적 행사 관련 업무시간 .....	90



## 요 약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보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교사 대 아동비율의 감소 요구와 초과보육 허용 금지가 주요한 논제가 되고 있음.
  -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보육교사들의 업무가 힘들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됨.
  -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부터 초과보육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임.
- 보육의 질적 개선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이 최근 일련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고, 이에 관한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과 같은 반편성 기준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행 어린이집의 유아 대 교사의 반별 비율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교사 배치 등의 구체적인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만3~5세 유아반 편성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 나.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선행 연구 및 사례 검토를 통하여 유아반의 편성 기준과 관련된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보육에 관한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함.
    -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을 산정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교사의 균무환경과의 관련성을 검토함.

- 원장 및 만3세 이상의 유아반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동일연령 및 혼합연령 학급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의 현황 및 요구, 초과보육 및 1, 2월 출생아동의 동년도 출생아와 함께 배정하는 원칙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함.
- 설문조사, 심층면담 및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적정 수준의 유아반 편성 기준을 모색함.
- 유아반 편성 기준 모색에 따른 학급 운영 및 교사 역할 방안을 제안함.

####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교사의 근무 현황,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등과 같은 유아반의 편성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자료 및 선행연구를 고찰함.

##### 설문조사

- 서울·경기지역 대상으로 유아 연령(만3~5세)을 고려하여 비례할당 후 선정된 148개소 어린이집을 조사원이 직접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 및 교사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서울·경기지역 148개소 어린이집의 원장 148명 및 만3~5세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반 교사 28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 심층면접

- 설립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3명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및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어린이집 교사 5명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 근무환경 등에 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자문회의

- 연구의 방향 설정, 설문지 검토, 유아반 보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선정 및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 전문가(직장 및 가정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포함)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

로 4회 자문회의를 실시함.

#### 라. 선행연구

-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관한 선행연구와 적정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산정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주요 요소인 교사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및 초과보육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교사의 근무환경과 교사 대 아동비율과의 관련성 선행연구 검토

### 2. 연구의 배경

#### 가. 어린이집 유아반 운영 현황

- 어린이집 운영 및 유아반 현황
  - 2012년 12월말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는 1,487,362명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비율이 51.7%로 가장 높았음.
  - 만0~5세 전체 보육아 1,475,328명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는 40.9%인 603,047명으로 영아에 비해 18.2%가 낮은 수치임.
    - 만3세 이상의 유아반 중에서는 만3세의 보육율이 58.1%로 가장 높았으며, 만5세의 보육율이 30.2%로 가장 낮았음.

#### 나.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지침

- 교사 대 아동비율과 초과보육에 대한 지침
  - 유아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유아 15인당 교사 1인이었으나 1994년부터 유아 20인당 교사 1인으로 변경되었다가 2005년부터 유아 15인당 교사 1인으로 유아의 비율이 줄었고, 4세 이상은 유아 20인당 교사 1인을 유지하였음.
  - 초과보육에 대한 조항은 2006년부터 신설되었으며, 2008년부터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0세반을 제외하고 1~2세반은 2인, 3세 이상 반은 3인의 초과보육을 허용하고 있음.

- 혼합반 운영 시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로 준수하여야 함.

1, 2월생 반편성 기준 지침

- 1, 2월생에 대한 반편성 기준 조항은 2009년 변경되어 3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동년도 2월 28일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 하던 방식에서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월 1일~동년도 12월 31일 출생)를 함께 반편성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 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다. 국외 반편성 사례

교사 대 아동비율 규정

-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에 의하면, 3세 반의 집단크기(한 보육실 최대인원)는 14명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1:7이며, 4세반과 5세반의 최대인원은 16명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은 1:8임.
- 영국정부는 2013년 1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보육정책 쇄신안을 발표하였으나, 3세 이상 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8 또는 1:13의 현 수준을 유지하였음.
- 일본의 유보제휴형 인정어린이원에서는 영유아의 이용시간에 따라 교사의 수를 다르게 배치하고 있음.
- OECD 19개국의 교사 대 아동비율(OECD, 2012)에 의하면,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의 경우 평균적으로 교사 1인이 최대 18명의 유아를 담당하고 있음.

### 3. 반편성 기준에 대한 요구 분석

#### 가. 유아반 운영 및 유아반 교사의 업무 실태

유아반 운영 실태

-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70% 이상이 등원한 시각은 '오전 9~10시'가

가장 많았고, 아동의 70% 이상이 하원한 시각은 주로 '오후 5~6시'였음.

- 재원 아동 중 20~30%가 어린이집에 남아 있을 때는 '여러 반을 통합해서 당직교사가 담당(50.7%)'하거나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눠 당직교사 2인이 각 반을 담당(24.3%)'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음.
-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85.5%가 종일제만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서울 지역보다는 경기도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반일제를 함께 운영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 유아반 교사의 업무 실태

- 조사대상 보육교사들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1일 총 시간은 약 11시간(재택근무시간 포함)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하루에 '평균 12시간 이상' 업무와 관련된 일을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33.6%를 차지하였음.
-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1일 평균 7시간 22분이었으며, 그 이외의 약 3시간 38분 정도를 보육 활동 준비, 문서작성, 보육 환경 관리 및 기타업무 등에 할애하고 있었음.
  - 전체 교사 응답 중 '7~8시간' 유아보육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55.4%로 가장 높았음.
- 교사들 중 75.7%의 교사들이 월 평균 1~5일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64.9%의 교사들이 월 평균 1일의 주말근무를 하고 있었음.

#### 나.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에 대한 의견

- 교사 대 아동비율에 있어서 3세반의 경우 원장은 1:12, 교사는 1:11 정도였으며, 4세반의 경우 원장은 1:15, 교사는 1:14 정도였고, 5세반의 경우 원장은 1:17, 교사는 1:16 정도로 모든 연령에서 교사가 생각하는 적정 비율이 원장이 생각하는 적정비율보다 낮았음.
- 연령별 집단크기(같은 보육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수)에서도 교사가 생각하는 집단크기가 원장이 생각하는 집단크기보다 작았음.
- 보조교사 1인을 추가배치하거나 정교사 2인이 한 보육실에 배치될 경우의 집단크기에 있어서도 교사가 생각하는 적정 유아 수는 원장이 생각하는 적

정 유아 수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 초과보육에 대한 조정 요구 및 의견**

- 조사대상 원장들의 경우에는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초과보육 금지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던 반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현재의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고(3명 허용) 응답하였음.
- 보육교사들의 경우에는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에서 초과보육 금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보육교사 추가배치 방안
  - 유아반에 비담임 보육교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할 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1~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 2급의 반소속 보조교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중상시 1일 평균 3~5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보조교사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 **라. 동일연령반 및 혼합반 편성**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연령반 편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마. 동년도 출생을 기준으로 한 반편성 원칙**

- 동년도 출생아만으로 반을 편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1, 2월생 아동을 동년도 출생아만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음.

### **4. 정책 제언**

#### **가. 어린이집 유아반 편성 기준 개선 방향**

- 어린이집 유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 대 유아비율이 하향 조정되어야 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 대 유아비율 조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됨.
- 이에 가능한 단기 방안으로 현재 다소 과중한 업무량과 긴 근무시간에 따른 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해줌으로 현행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유지하도록 함.
- 단기 방안
  - 현행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배치를 잘 활용하여 교사 지원
  - 한 교실에서 두 명의 담임이 유아를 담당하는 팀티칭 형태일 때, 교사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과 보조교사 배치와 같은 추가 인력 지원
- 중장기 방안
  - 교사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한 2명의 교사가 근무 시간을 달리하여 보육할 수 있는 2교대 근무
  - 대체교사의 상시적인 활용이 가능한 체제 운영
- 초과보육은 금지 원칙 고수
  - 현재 초과보육 규정을 준수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실정을 감안한 적정 표준보육비의 산정 및 실현
- 1, 2월 출생아의 경우 동년도 출생아와 같은 반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현행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
- 이미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착하도록 함.

#### 나. 어린이집 유아반 편성 기준 개선 방안

- 유아반의 편성 기준 모색
  -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방안
  - 교사 대 아동비율 현행 유지하면서 추가 인력 배치 방안
- 유아반 편성 기준 모색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운영 방안

○ 단기 방안

- 보조교사 배치 지원
- 팀티칭 활용

○ 중장기 방안

- 순환근무 장려
-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지원 제공 및 상시대체교사제

초과보육 금지 원칙 준수

동일연령반 위주의 반 구성

1, 2월생에 대한 반편성 기준은 동년도 출생아와 같은 반으로 구성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보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교사 대 아동비율의 감소 요구가 주요한 논제가 되고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보육교사들의 업무가 힘들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보육의 질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3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어린이집 만3세 이상 유아반 편성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에 관하여 동일연령과 혼합연령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동일연령 유아반의 편성 기준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3세 1:15, 만4세 이상 1:20이며, 만3세와 만4세 이상은 3명씩 초과보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합연령 유아반의 편성 기준에 있어서는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의 혼합연령 편성은 가능하며, 만2세 이하 영아와 만3세 유아의 혼합편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만2세와 만3세 혼합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혼합연령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에 관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김명순 외(2009) 연구에서 만3세는 원장, 교사 부모 모두 교사 1인이 담당할 아동의 수가 현행 기준인 15명 보다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원장-14.1, 교사-12.0, 부모-9.8명), 또한 만4세(원장-18.6, 교사-16.0, 부모-13.2)와 만5세(원장-19.8, 교사-17.7, 부모-15.0)의 경우도 현행의 20명보다 낮은 기준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장에 비해 교사와 학부모가 현행 기준보다 훨씬 더 낮은 비율을 요구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2년도에 수행했던 연구(이미화·여종일·엄지원, 2012)에서 만3세와 만4~5세의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 유지를 해야 하는지를 학계 전문가, 공무원, 현장 전문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만3세에서 60.3%, 만4~5세에서 62.0%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보육사업안내에서 초과보육 조항은 2006년부터 신설되었다. 초과보육 금지에

대한 사안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영아보육의 질 고려 시 주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초과보육의 원래 의도는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영유아의 전출입 등 유동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해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초과보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상황과 무관하게 원장 또는 학부모의 요구로 초과보육 제도의 오용될 위험도 있다. 김명순 외(2009) 연구에 의하면, 원장은 대기자가 없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초과보육에 긍정적이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경우에는 영아의 안전 보호, 위생, 교사와 영아 간의 수유, 낮잠지도 등 개별적이고 온정적인 상호작용, 교사의 업무 가중의 이유로 초과보육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초과보육 제도의 취지대로 일부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어린이집에서만 초과보육 허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그 이외에는 부모나 원장의 요구 때문에 초과보육이 시행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교사의 업무량과 같은 근무환경과의 관계에서 적정 수준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초과보육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사가 보육 이외에 해야 할 업무량이 많은 근무환경에서는 교사가 개별 아동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고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 등과 같은 보육정책 변화의 영향, 설문 대상의 구성, 연구의 목적에 의한 설문 구성 등의 이유로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부터 초과 보육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보육의 질적 개선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이 최근 일련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고, 이에 관한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반편성 기준 개선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영아반 편성과 유아반 편성 기준이 다르며,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특성도 많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령에 따른 반편성 기준은 달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금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행되는 기본과제에서 영아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영아반 편성 기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완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3세 이상

의 유아반 편성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반을 중심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과 같은 반편성 기준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행 어린이집의 유아 대 교사의 반별 비율의 적합성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교사 배치 등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를 통하여 만3세 이상의 유아반 편성 기준과 관련된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보육에 관한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한다. 또한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을 산정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교사의 근무환경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둘째, 원장 및 만3~5세 유아반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동일연령 및 혼합연령 학급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의 현황 및 요구, 초과보육 및 1, 2월 출생아동의 동년도 출생아와 함께 배정하는 원칙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한다.

셋째, 설문조사, 심층면담 및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적정 수준의 유아반의 편성 기준을 모색한다.

넷째, 유아반 편성 기준 모색에 따른 학급 운영 및 교사 역할 방안을 제안한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교사의 근무 현황,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등과 같은 유아반의 편성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 나. 설문조사

서울·경기지역 대상으로 유아 연령(만3~5세)을 고려하여 비례할당 후 선정된 148개소 어린이집을 조사원이 직접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 및 교사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설문조사 대상

서울·경기지역의 148개소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148명 및 해당 어린이집에서 만3~5세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반 교사 28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기관의 특성으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54.7%이었고,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45.3%에 해당하였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7.6%, 사회복지법인/단체 어린이집 18.1%, 민간어린이집 44.3%였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91%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은 상황이었다. 정원 규모는 80명 이상 어린이집이 4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79명 이하 어린이집이 38.9%, 39명 이하 어린이집 13.4% 순이었다. 정원 충족여부로는 정원 미달인 어린이집이 70.5%로 정원 충족이 되지 않은 어린이집 29.5%에 비해 더 많았다.

〈표 1-3-1〉 응답기관의 특성

단위: %(개소)

구분	계	구분	계
전체	100.0(148)		
소재지		정원규모	
서울특별시	54.7	39명 이하	13.4
경기도(중소도시)	39.9	40~79명 이하	38.9
경기도(군지역)	5.4	80명 이상	47.7
설립유형		정원 충족 여부	
국공립	37.6	정원 충족	29.5
사회복지법인/단체	18.1	정원 미달	70.5
민간	44.3		
평가인증 여부			
인증	91.2		
미인증	8.8		

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특성으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가 45.0%이었고,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는 55.0%에 해당하였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가 23.8%, 사회복지법인/단체어린이집 교사 12.4%, 민간어린이집 교사가 63.8%이었다.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단일연령 유아반의 경우, 3세반 교사가 35.8%, 4세반 27.3%, 5세반 25.2% 이었고, 혼합연령 반의 경우에는 3~4세반 교사가 3.2%, 4~5세반 교사 5.3%, 3~5세반 교사가 3.2%이었다.

교사들의 하루 총 업무시간은 12시간 이상이 3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시간 미만 18.9%, 9시간 미만 17.1%, 11시간 미만 16.8%, 12시간 미만 13.6% 순이었다. 초과근무 여부의 경우,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66.3%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33.7%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시간외 수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50.5%와 49.5%로 거의 반반 수준이었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 교사가 83.6%, 계약직 15.7%와 시간제 0.7%로 조사 응답 교사의 대부분은 정규직이었다.

교사 연령에서는 20대 40.4%, 30대 41.1%, 40대 17.8%, 50대 0.7%로 20대와 30대의 교사가 가장 많았다. 교사 학력은 전문대졸이 5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졸 30.4%, 고졸 12.5%, 대학원 졸업 이상이 2.8% 순이었다. 보육교사 경력으로는 5년이상이 4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3년 미만 17.3%, 3~4년 미만과 4~5년 미만이 각각 14.4%, 2년 미만 7.9% 순이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경력은 1~2년 미만 23.2%, 2~3년 미만 2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 19.9%, 5년 이상 16.9% 순이었다. 교사의 소지자격은 보육교사 1급이 5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육교사 2급이 46.3%, 보육교사 3급이 0.4% 순이었다.

〈표 1-3-2〉 응답교사의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구분	계
전체	100.0(286)		
소재지		연령	
서울특별시	45.0	20대	40.4
경기도(중소도시)	46.8(131)	30대	41.1(111)
경기도(군지역)	8.2( 23)	40대	17.8( 48)
설립유형		50대 이상	0.7( 2)
국공립	23.8( 67)	최종학력	

(표 I-3-2 계속)

구분	계	구분	계
사회복지법인/단체	12.4( 35)	고졸	12.5( 36)
민간	63.8(180)	전문대졸	54.3(155)
담당반 연령		대학졸	30.4( 87)
3세	35.8(101)	대학원 졸업 이상	2.8( 8)
4세	27.3( 77)	전체 보육교사 경력	
5세	25.2( 71)	2년 미만	7.9
3~4세 혼합반	3.2( 9)	2~3년 미만	17.3
4~5세 혼합반	5.3( 15)	3~4년 미만	14.4
3~5세 혼합반	3.2( 9)	4~5년 미만	14.4
1일 총 업무시간		5년 이상	46.0
9시간 미만	17.1(49)	현 어린이집 경력	
10시간 미만	18.9(54)	1년 미만	19.9
11시간 미만	16.8(48)	1~2년 미만	23.2
12시간 미만	13.6(39)	2~3년 미만	22.8
12시간 이상	33.6(96)	3~4년 미만	8.8
초과근무 여부		4~5년 미만	8.5
초과	66.3(183)	5년 이상	16.9
미초과	33.7(93)	소지자격	
시간외수당 유무		보육교사 1급	52.6(150)
있음	50.5(143)	보육교사 2급	46.3(132)
없음	49.5(140)	보육교사 3급	0.4( 1)
고용형태		기타	14.0( 43)
정규직	83.6(239)		
계약직	15.7( 45)		
시간제	0.7( 2)		

## 2) 설문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원장용과 교사용 2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린이집 원장 및 3~5세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각각 실시되었다. 설문지 내용은 다음의 <표 I-3-3>과 같다.

〈표 1-3-3〉 원장용 및 교사용 설문지의 문항 구성 영역 및 내용

영역		내용
원장용	어린이집 일반현황	정원, 설립유형, 소유·임대 형태, 종사자 수, 보육실 면적, 평가인 증 여부, 서울형 여부
	영유아반 일반현황	연령별 반 수(단일연령, 혼합연령, 장애아통합반), 반별 교사 수,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여부, 운영시간
	인력현황	직책, 연령, 학력, 최종전공, 소지자격, 총 경력, 현원 경력, 1일 업무 시간, 고용형태
	반 운영에 대한 요구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 반 운영 시 고려사항, 비담임 보육교사 추가배치의 필요성 및 방식
일반적 배경		성별, 연령, 최종학력, 최종전공, 원장 경력
교사용	담당학급 현황	담당 연령, 담당반 아동 수 및 교사 수, 반 운영시간, 보조교사 활용여부
	반 운영에 대한 요구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 반 운영 시 고려사항, 비담임 보육교사 추가배치의 필요성 및 방식
	일반적 배경	성별, 연령, 직책, 최종학력, 최종전공, 소지자격, 경력, 1일 업무 시간, 고용형태

## 다. 심층면접

설립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3명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 5명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1-3-4〉 심층면담조사 대상

사례	유형	담당 연령	일시	주요 면담내용
원장 A	국공립	-	2013. 12. 13	-어린이집 유아반 운영 현황 -보조교사 활용 여부 및 업무 -연령별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
원장 B	법인·단체등	-	2013. 12. 13	-초과보육 유무 및 조정 요구 -2인 담임제/팀티칭 -개선방안
원장 C	민간	-	2013. 12. 13	

(표 I-3-4 계속)

사례	유형	담당 연령	일시	주요 면담내용
교사 A	국공립	3세	2013. 12. 3	-근무시간, 업무량 및 근무형태 -인력지원 현황
교사 B	국공립	5세	2013. 12. 3	-연령별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
교사 C	법인·단체등	4세	2013. 12. 3	-초과보육 유무 및 조정 요구
교사 D	법인·단체등	3세	2013. 12. 3	-혼합반 운영 경험
교사 E	민간	3~5세 혼합	2013. 12. 3	-개선방안

## 라. 자문회의

연구의 방향 설정, 설문지 검토, 유아보육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선정 및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 전문가(직장 및 가정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포함)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lt;표 I-3-5&gt; 자문회의 참여자 배경 특성

차수	대상구분	회의 내용	소속 및 직위
1차	현장전문가	연구의 방향 및 조사방법 논의	직장어린이집 원장 가정어린이집 원장
2차	현장전문가	설문지 검토	원장 3인 교사 5인
3차	현장전문가	반편성 기준 조사결과 논의	전 보육정보센터장 삼성복지재단 팀장
4차	학계전문가	반편성 기준 개선 정책방안 논의	관련 학과 교수 보육정보센터장

## 4.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교사 대 아동비율에 관한 연구 및 적정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인인 교사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 가.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

교사 대 아동의 높은 비율은 교사를 소진시켜 교사가 개별 아동에게 적절한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기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육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교사 대 아동비율에 관한 논의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서문희·이미화·구미진(2006: 277-290)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설장 302명과 보육교사 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에 따른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보육인력의 근로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도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보육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어린이집에서의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준수되어야 함과 더불어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로 함을 주장하였다.

보육현장에서 아동 집단의 크기를 제한하거나 영유아를 돌보는 성인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영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과 안전 및 영유아의 사회성과 인지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사와의 정교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는 인적환경과 같은 논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와 아동과의 상호작용 등의 질을 예측하는 가장 일관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Blau, 1999; NICHD ECCRN, 2000, 2002, 2004; Phillipsen et al., 1997; Pianta, Barnett, Burchinal, & Thornburg, 2009: 68). 미국공중보건협회와 미국소아학회에서 제안하는 권장사항-교사 대 아동비율, 집단 크기,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수준-을 잘 지키는 보육 기관에 등록된 영유아가 권장사항을 잘 지키지 않는 기관에 등록된 영유아에 비해 인지, 언어, 사회성 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NICHD ECCRN, 1999; Pianta, Barnett, Burchinal, & Thornburg, 2009: 68). 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등의 질적 수준이 아동의 학습능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Pianta, Barnett, Burchinal, & Thornburg, 2009: 68).

이기심(2010: 89-90)은 현행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육교사가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을수록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과중한 업무를 경험하게 되기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개선되어야만 보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은영·도남희·조은경·조혜주(2011: 194-196)는 육아지원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개선 방안 연구에서 어린이집 인력 운영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형에 의하면, 어린이집 교사는 현 규정을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에 근거하여 1명의 정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유치원 종일제 교사처럼 오후 전담 교사를 두며, 인력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제 보조교사(2반 당 1인 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나. 교사의 근무환경과 교사 대 아동비율과의 관련성

교사의 근무환경은 교사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기에 교사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량과 상관없이 적정 비율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김현주(2008: 6-7, 18-19)는 업무환경과 정서노동이 보육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보육교사 업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업무분장 및 절대적인 노동력 수의 증가를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보육시설 당 보육교사의 수를 늘리는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미경과 강란혜(2011: 13-14, 42)는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실태 개선에 대해 고찰하고자 관련법과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정도를 넘어서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의 준수하되 보육교사의 실질 근무시간에 대해 시설운영시간과 수요자의 이용시간의 분리된 개념을 확립하여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비용의 재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현미(2005: 74-75)는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근무 외 시간에 대한 교사인력 배치 언급이 마련이 되지 않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여분의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초과근무로 인한 과중한 업무는 영유아를 돌보는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협하여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였다.

심숙영(1999: 9)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근무시간이 길고 아동수가 많을수록 일에서 성취감을 덜 느꼈으며, 특히 많은 아동 수로 인하여 교사들은 자주 소진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은영·권미경·조혜주(2012: 97-118)의 연구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무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들이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사에 대한 처우와 대인관계, 본연의 업무 이외의 직무수행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수행의 어려움에서는 업무 과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수행 시 지원 요구 사항으로는 초과근무 수당지급 및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 분석에 따라 시사점을 도출하여 얻어진 정책방안으로 교사지원 측면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한 보조인력 지원, 초과 근무수당 지급, 교사 처우 개선 및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 II. 연구의 배경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 유아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과 관련된 현행 반편성 기준 지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외 반편성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어린이집 유아반 운영 현황

#### 가. 어린이집 운영 및 유아반 현황

2012년 12월말 기준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1>과 같다. 어린이집은 전국에 42,527개소가 있으며, 시설 수로는 가정어린이집이 5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이 34.0%로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이 87.9%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는 1,487,362명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비율이 51.7%로 가장 높았다.

<표 II-1-1> 2012년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운영 현황(2012. 12)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어린이집 수	42,527 (100.0)	2,203 (5.2)	1,444 (3.4)	869 (2.0)	14,440 (34.0)	22,935 (53.9)	113 (0.3)	523 (1.2)
정원	1,721,917 (100.0)	162,926 (9.5)	140,839 (8.2)	62,575 (3.6)	904,956 (52.6)	408,727 (23.7)	3,490 (0.2)	38,404 (2.2)
현원	1,487,361 (100.0)	149,677 (10.1)	113,049 (7.6)	51,914 (3.5)	768,256 (51.7)	371,671 (25.0)	2,913 (0.2)	29,881 (2.0)
정원총족률	(86.4)	(91.8)	(80.3)	(83.0)	(84.9)	(90.9)	(83.5)	(77.8)

주: 1) 2012년 12월 31일 24:00 기준; 2) 아동수: 현원(종일, 야간, 24시간, 휴일, 단축형)기준,

3) 정원총족률: 현원/정원×100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2 보육통계. p. 4를 참고로 재구성함.

2012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13)를 바탕으로 연령과 설립유형에 따른 보육 영유아 수 및 각 연령별 총 인구 수 대비 보육율과 영유아 수 대

비 유아비율을 <표 II-1-2>에 제시하였다. 만0~5세 전체 보육아 1,475,328명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는 603,047명으로 영아에 비해 18.2%가 낮은 수치였다. 연령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보육율)에 있어서는 만2세의 보육율이 79.2%로 가장 높았으며, 만5세의 보육율이 30.2%로 가장 낮았다. 유아 중에서는 만3세의 보육율이 58.1%로 가장 높았다. 각 설립유형별로 전체 보육인원에서 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에서는 유아의 보육 비율이 60%를 넘었던 반면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유아의 보육 비율이 1.8%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 보육아 수와 만5세 보육아 수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치원 이용률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1-2> 연령과 설립유형에 따른 보육아 수(2012)

단위: 명(%)

구분	2012년 인구(A)	보육율(B/A)	보육 영유아							
			계(B)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만0세	464,374	(38.3)	177,757	3,418	3,434	1,283	43,717	124,474	168	1,263
만1세	472,275	(68.1)	321,713	18,576	15,264	6,197	130,442	145,610	399	5,228
만2세	470,956	(79.2)	372,811	31,629	25,528	10,589	202,625	94,908	682	6,850
만3세	446,256	(58.1)	259,112	33,698	25,789	11,842	175,252	4,763	601	7,167
만4세	467,432	(41.6)	194,413	32,459	22,175	10,833	121,779	1,052	550	5,565
만5세	494,810	(30.2)	149,522	27,865	18,281	8,789	89,745	690	495	3,657
영아 수	1,407,605	(62.0)	872,281	53,623	44,226	18,069	376,784	364,992	1,249	13,341
유아 수	1,408,498	(42.8)	603,047	94,022	66,245	31,464	386,776	6,505	1,646	16,389
영유아 수	2,816,103	(52.4)	1,475,328	147,645	110,471	49,533	763,560	371,497	2,895	29,730
영유아비 유아 비율	(50.0)	-	(40.9)	(63.7)	(60.0)	(63.5)	(50.7)	(1.8)	(56.9)	(55.1)

주: 2012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p. 89, p. 235.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보고(이미화 외, 2012)에서도 보육 영유아 연령 분포에 있어서 조사대상 4,000개소의 전체 보육아 17만명 중 만2세가 24.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만3세 이상의 유아반 중에서는 만3세가

20.9%로 보육하고 있는 유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만5세로 갈수록 유아 비율이 낮아졌다. 2012년 보육 영유아 연령 분포 결과는 2009년 보육 영유아 연령 분포 결과에 비해 모든 연령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유아반의 경우 만3세반은 1.7%, 만4세반은 3.1%, 만5세반은 4.2%가 감소한 수치였다.

〈표 II-1-3〉 보육 영유아 연령 분포(2012)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단위: %(명)
							계(수)
전체	6.8	17.6	24.5	20.9	16.8	13.4	100.0(175,873)
<b>설립유형</b>							
국공립	2.0	12.7	21.5	22.9	22.0	19.0	100.0( 30,479)
사회복지법인	2.6	12.3	23.4	25.0	20.3	16.5	100.0( 22,669)
법인·단체	2.0	11.1	21.6	24.4	22.6	18.4	100.0( 20,602)
민간	4.5	15.2	25.7	24.4	16.8	13.3	100.0( 63,555)
가정	27.1	40.0	29.1	2.3	1.4	0.2	100.0( 25,476)
직장	4.4	16.0	22.6	23.4	20.0	13.7	100.0( 13,093)
<b>정원규모</b>							
20명 이하	27.0	39.7	29.0	2.5	1.5	0.3	100.0( 26,047)
21~39명	9.4	24.9	31.5	20.6	8.4	5.1	100.0( 19,466)
40~79명	3.7	15.9	25.7	23.6	17.9	13.3	100.0( 45,489)
80명 이상	1.6	9.9	20.8	25.3	22.9	19.4	100.0( 84,871)
2009년 조사	4.1	12.8	23.0	22.6	19.9	17.6	100.0(126,219)

주: 1) 2009년 만5세 영유아 비율(수), 17.6%(22,155명)에는 방과후 아동 1.5%(1,887명)을 포함하였음.

2) 2012년 취학을 미루고 있는 아동은 만 5세에 포함하였음.

3) 응답 내용은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함.

자료: 이미화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78.

## 나. 어린이집 정원 초과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보고(이미화 외, 2012)에 의하면, 만1세와 만2세 영아반의 정원 초과 비율이 유아반의 정원 초과 비율보다 약 3~8배 높았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반 정원 초과 비율이 다른 유형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 3세반의 정원 초과 비율이 10% 정도를 차지하였다. 정원규모별로는 정원규모가 클수록 유아반의 정원 초과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1-4〉 정원 초과 어린이집 비율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단위: %(명)
							계(수)
전체	1.9	23.3	21.7	8.5	3.6	2.9	100.0(4,000)
<b>설립 유형</b>							
국공립	0.5	26.1	36.7	20.9	10.0	6.5	100.0( 463)
사회복지법인	1.7	24.3	27.8	18.8	6.9	8.0	100.0( 326)
법인·단체	3.5	23.7	26.8	15.0	7.8	5.3	100.0( 336)
민간	1.8	27.0	28.3	10.2	4.4	3.7	100.0(1,192)
가정	2.4	20.9	11.0	0.5	-	-	100.0(1,462)
직장	-	12.7	14.6	6.8	0.9	1.8	100.0( 221)
<b>소재지</b>							
대도시	0.5	24.4	22.9	10.3	3.7	3.5	100.0(1,480)
중소도시	1.0	21.6	21.5	6.4	3.4	2.8	100.0(1,692)
읍·면지역	6.8	25.1	19.9	10.0	3.9	2.3	100.0( 828)
<b>정원 규모</b>							
20명 이하	2.3	20.9	11.2	0.5	-	0.1	100.0(1,469)
21~39명	1.9	24.5	20.2	3.6	0.6	0.6	100.0( 668)
40~79명	1.9	27.1	30.2	13.2	4.5	2.1	100.0( 946)
80명 이상	1.2	22.8	32.8	22.0	11.5	11.0	100.0( 890)

자료: 이미화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86.

## 다. 누리과정 지원인력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 지원금을 보육교사의 누리과정 수업 준비와 평가 등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채용 및 인건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의 3~4세 확대로 운영비 지원이 늘어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은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3: 271)

〈표 II-1-5〉 보조교사 인건비 기준

누리과정 (일반아동)	누리과정 (장애인아동)	보조교사 인건비(채용 원칙)
2개반 이하	8개반 이하	우선 활용 권장
3~4개반	9~14개반	우선 활용(최소 1명 이상)
5~7개반	15~20개반	우선 활용(최소 2명 이상)
8~10개반	21개반 이상	우선 활용(최소 3명 이상)
11개반 이상	-	우선 활용(최소 4명 이상)

주: 반 수는 누리과정 담임교사 쳐우개선비 지급 인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육사업안내. p. 271.

권미경 외(2013) 연구에서 전국 어린이집 497개소의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반에 담임교사 1인 이외에 추가인력이 배치되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3세반의 46.3%, 4세반의 36.6%, 5세반의 38.4%, 혼합반의 64.7%가 추가인력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I-1-6〉 누리과정 운영반 담임교사 외 추가 인력 현황(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없음	보조교사 (4개반 공동)	보조교사 (3개반 공동)	보조교사 (2개반 공동)	보조교사 (단일반)	지원 인력 <sup>1)</sup>	기타 <sup>2)</sup> (사례수)
담당 연령							
3세반	46.3	3.6	21.7	8.0	7.6	10.9	3.8 (497)
4세반	36.6	5.1	26.3	9.5	9.2	11.9	3.7 (369)
5세반	38.4	5.8	25.1	8.1	10.6	10.9	3.3 (359)
혼합반	64.7	2.9	10.0	5.9	5.3	8.8	4.1 (170)

주: 1) 누리과정 도우미 등, 2) 특수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상시), 3.7기타인력  
자료: 권미경 외(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 2.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지침

### 가.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에 대한 지침

#### 1) 연도별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에 대한 지침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8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과 더불어 취업여성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공되던 탁아사업은 영유아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까지도 책임지는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보육사업지침 및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에 대한 지침은 <표 II-2-1>과 같다. 3세 이상 유아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유아 15인당 교사 1인이었으나 1994년부터 유아 20인당 교사 1인으

로 변경되었다가 2005년부터 유아 15인당 교사 1인으로 유아의 비율이 줄었고 4세 이상은 유아 20인당 교사 1인을 유지하였다. 영유아의 초과보육에 대한 조항은 2006년부터 신설되었으며, 2008년부터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0세반을 제외하고 1~2세반은 2인, 3세 이상 반은 3인의 초과 보육을 허용하고 있다.

〈표 II-2-1〉 연도별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 관련 지침(1999~2013년)

연도	설립유형	지침
1991~ 1993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 미만 7인당 1인</li> <li>- 3세 이상 15인당 1인</li> </ul>
	가정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10인 이상의 경우</li> <li>- 3세 미만 5인당 1인</li> <li>- 3세 이상 10인당 1인</li> <li>· 아동 10인 미만인 경우, 1인</li> </ul>
1994~ 1995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세 미만 5인당 1인</li> <li>- 2세 7인당 1인</li> <li>- 3세 이상 20인당 1인</li> </ul>
	가정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 미만 5인당 1인</li> <li>- 3세 이상 영유아 1인</li> </ul>
1996~ 2004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세 미만 5인당 1인</li> <li>- 2세 7인당 1인</li> <li>- 3세 이상 20인당 1인(40인당 유치원 교사 1인)</li> <li>- 취학아동 30인당 1인</li> <li>- 장애아동 5인당 1인(10인당 특수교사 1인)</li> </ul>
	가정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세 미만 5인당 1인</li> <li>- 2세 7인당 1인</li> <li>- 3세 이상 20인당 1인(취학아동 20인까지)</li> </ul>
2005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 미만 3인당 1인</li> <li>- 1세 이상 2세미만 5인당 1인</li> <li>- 2세 이상 3세미만 7인당 1인</li> <li>- 3세 이상 4세미만 15인당 1인</li> <li>- 4세 이상 미취학 20인당 1인</li> <li>- 취학아동 20인당 1인</li> <li>- 장애아 3인당 1인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li> </ul>
	가정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 20인 이하 시설: 영아 또는 유아반을 구분하여 보육 가능</li> </ul>

(표 II-2-1 계속)

연도	설립유형	지침
2006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 미만 3인당 1인</li> <li>- 1세 이상 2세미만 5인당 1인</li> <li>- 2세 이상 3세미만 7인당 1인</li> <li>- 3세 이상 4세미만 15인당 1인</li> <li>- 4세 이상 미취학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li> <li>- 취학아동 20인당 1인</li> <li>- 장애아 3인당 1인(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li> </ul>
	가정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 20인 이하 시설: 영어 또는 유아반을 구분하여 보육 가능</li> </ul>
	초과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반당 1인 초과보육 가능 (0세반 제외)</li> </ul>
2007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 미만 3인당 1인</li> <li>- 1세 이상 2세미만 5인당 1인</li> <li>- 2세 이상 3세미만 7인당 1인</li> <li>- 3세 이상 4세미만 15인당 1인</li> <li>- 4세 이상 미취학 20인당 1인(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li> <li>- 취학아동 20인당 1인</li> <li>- 장애아 3인당 1인(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li> </ul>
	초과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반당 1인 초과보육 가능(0세반 제외)</li> <li>-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은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li> </ul>
2008~2013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 미만 3인당 1인</li> <li>- 1세 이상 2세미만 5인당 1인</li> <li>- 2세 이상 3세미만 7인당 1인</li> <li>- 3세 이상 4세미만 15인당 1인</li> <li>- 4세 이상 미취학 20인당 1인(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li> <li>- 취학아동 20인당 1인</li> <li>- 장애아 3인당 1인(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li> </ul>
	초과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1~2세반은 2인, 3세 이상반은 3인 초과보육가능(0세반 제외)</li> <li>-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은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li> </ul>

자료: 보건복지부(1991~1998). 보육사업지침; 보건복지부(1999~2013). 보육사업안내.

## 2)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 인정범위

어린이집은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표 II-2-2)

참조). 또한 어린이집은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표 II-2-2〉 어린이집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초과보육 인정범위

교사 대 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초과보육 인정범위	해당없음	1:7명 이내	1:9명 이내	1:18명 이내	1:23명 이내

- 주: 1) 영유아의 전출입등 유동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해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초과보육 가능  
 2) 2014년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내 시설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과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보육 허용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사업안내. p. 73.

혼합반 운영 시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로 준수하여야 한다. 혼합반은 연령조합에 따라 반편성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동일연령반과 같이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장애아의 경우, 장애(별달)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으나, 연령과 달리 편성할 때 부모와 협의 후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한다.

〈표 II-2-3〉 어린이집 혼합반 운영 원칙 및 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운영	만0세와 만1세 영아	만1세와 만2세 영아	만0세와 만2세 영아	만2세이하 영아와 만3세이상 유아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3	1:5	-	-	1:15

- 주: 1) 영유아의 전출입등 유동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해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초과보육 가능  
 2) 2014년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내 시설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과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보육 허용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사업안내. p. 73.

## 나. 반편성 기준 지침

### 1) 연도별 반편성 기준 지침

1, 2월생에 대한 반편성 기준 조항은 2009년 변경되어 3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동년도 2월 28일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 하던 방식에서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월 1일~동년도 12월 31일 출생)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표 II-2-4 참조).

〈표 II-2-4〉 연도별 반편성 기준 원칙(2007~2013년)

연도	원칙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령별 반편성 기준일은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과 동일하게 <u>3월 1일을 기준으로</u> 함(1, 2월생은 전년도 3.1~동년도 2.28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li> <li>2) 보육시설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 만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li> <li>3)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보육활성화를 위하여 영아반 비율을 높게 편성하도록 지도해야 함</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령별 반편성 기준일은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과 동일하게 <u>3월 1일을 기준으로</u> 함(1, 2월생은 전년도 3.1~동년도 2.28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u>1, 2월생의 경우 보호자신청에 의해</u> 동년도 출생아반에 편성 가능</li> </ul> </li> <li>2) 보육시설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영 아반, 만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u>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u>)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u>전년도 상위연령반에 편성되었던</u> 1, 2월생 영유아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 가능</li> </ul> </li> <li>2) 보육시설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 만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li> </ul>
2010~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u>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u>)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u>1, 2월생 아동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에 의해</u> 상위연령반에 편성 가능</li> <li>- <u>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날부터</u> 보호자 신청에 의해 익월부터 <u>만1세반으로</u> 편성 가능</li> <li>- 취학유예아동은 <u>만5세아반으로</u> 편성 가능</li> </ul> </li> </ul>

자료: 보건복지부(2007~2013). 보육사업안내.

## 2)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2009년 2월 1일생은 「2009. 1. 1~2009.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2008년생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취학유예아동의 경우에도 취학유예통지서를 제출하면 만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하다.

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적용은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기존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표 II-2-5〉 2013년도 어린이집 연령별 반편성 기준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1세반	2011. 1. 1 ~ 2011. 12. 31
만2세반	2010. 1. 1 ~ 2010. 12. 31
만3세반	2009. 1. 1 ~ 2009. 12. 31
만4세반	2008. 1. 1 ~ 2008. 12. 31
만5세반	2007. 1. 1 ~ 2007. 12. 31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사업안내. p. 71.

### 3. 국외 반편성 사례

#### 1) 미국

미국유아교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AEYC)에서는 월령별 집단크기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II-3-1 참조). 집단크기(group size)는 반의 규모(class size)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보육실의 최대인원을 의미한다. 50개월 유아의 경우, 같은 보육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유아 수가 20명이라면 교사 대 아동비율인 1:10 기준에 따라 교사 2명이 최대 20명까지의 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표 II-3-1〉 미국유아교육협회(NAEYC)의 월령별 집단크기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

월령	집단크기							
	6	8	10	12	14	16	18	20
0~15개월	1:3	1:4						
12~28개월	1:3	1:4	1:4	1:4				
21~36개월		1:4	1:5	1:6				
30~48개월				1:6	1:7	1:8	1:9	
48~60개월						1:8	1:9	1:10

자료: NAEYC(2013). New Guidance on NAEYC Accreditation Criteria(<http://www.naeyc.org/academy/files/academy/file/NewGuidanceOnNAEYCAccreditationCriteriaEffectiveApril2013.pdf>).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제시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에 대한 지침은 <표 II-3-2>와 같다. 3세반의 경우, 한 보육실 최대인원은 14명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1:7이며, 4세반과 5세반의 최대인원은 16명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1:8이다.

<표 II-3-2> 미국 보건복지부의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

	0~24개월	25~30개월	31~35개월	3세	4~5세
교사 대 아동비율	1:3	1:4	1:5	1:7	1:8
최대인원	6	8	10	14	16

자료: Korjenevitch, M., & Dunifon, R. (2010). Child care center quality and child development.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http://ec2-107-20-204-151.compute-1.amazonaws.com/pam/outreach/parenting/research/upload/Child-20Care-20Center-20Quality-20-20Development-20Brief\\_FINAL.pdf](http://ec2-107-20-204-151.compute-1.amazonaws.com/pam/outreach/parenting/research/upload/Child-20Care-20Center-20Quality-20-20Development-20Brief_FINAL.pdf)).

미국 소아과학회 및 공중보건협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nd American Public Health)에서 제시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는 <표 II-3-3>과 같다. 3세 이상 유아반의 경우, 미국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같이 3세반의 집단크기는 14명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1:7이며, 4세반과 5세반의 집단크기는 16명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1:8이다.

<표 II-3-3> 미국 소아과학회 및 공중보건 협회의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

	0~12개월	13~30개월	31~35개월	3세	4~5세
교사 대 아동비율	1:3	1:4	1:5	1:7	1:8
최대인원	6	8	10	14	16

자료: Korjenevitch, M., & Dunifon, R. (2010). Child care center quality and child development.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http://ec2-107-20-204-151.compute-1.amazonaws.com/pam/outreach/parenting/research/upload/Child-20Care-20Center-20Quality-20-20Development-20Brief\\_FINAL.pdf](http://ec2-107-20-204-151.compute-1.amazonaws.com/pam/outreach/parenting/research/upload/Child-20Care-20Center-20Quality-20-20Development-20Brief_FINAL.pdf)).

## 2) 영국

영국정부는 2013년 1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보육정책 쇄신안을 발표하였다. 1세 이하 영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에서 1:4로, 2세 영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1:4에서 1:6으로 상향 조정한 반면, 3세 이상 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8 또는 1:13의 현 수준을 유지하였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3).

〈표 II-3-4〉 영국 교육부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정안(2013)

	0세	1세	2세	3세 이상
기존 비율	1:3	1:3	1:4	1:8 또는 1:13
개정 비율	1:4	1:4	1:6	1:8 또는 1:13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2013). Consultation on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staff deployment (<https://www.education.gov.uk/publications/standard/publicationDetail/Page1/DFE-00002-2013>).

### 3) 일본

일본은 2012년 8월 ‘자녀·육아에 관한 3법’의 국회 가결을 통해 보육시설 시스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새로운 시설형지급(국가가 재정지원) 보육시설인 ‘유보제휴형 인정어린이원’은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인정한 유치원·보육소 등의 기능을 겸비한 시설의 총칭이다. 유보제휴형 인정어린이원은 기본적으로 유아기 교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 및 가정 내의 양육 지원을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유보제휴형 인정어린이원에서는 영유아의 이용 시간에 따라 교사의 수를 다르게 배치하고 있다(표 II-3-5 참조).

〈표 II-3-5〉 일본 유치원, 보육소, 유보제휴형 인정어린이원의 직원 배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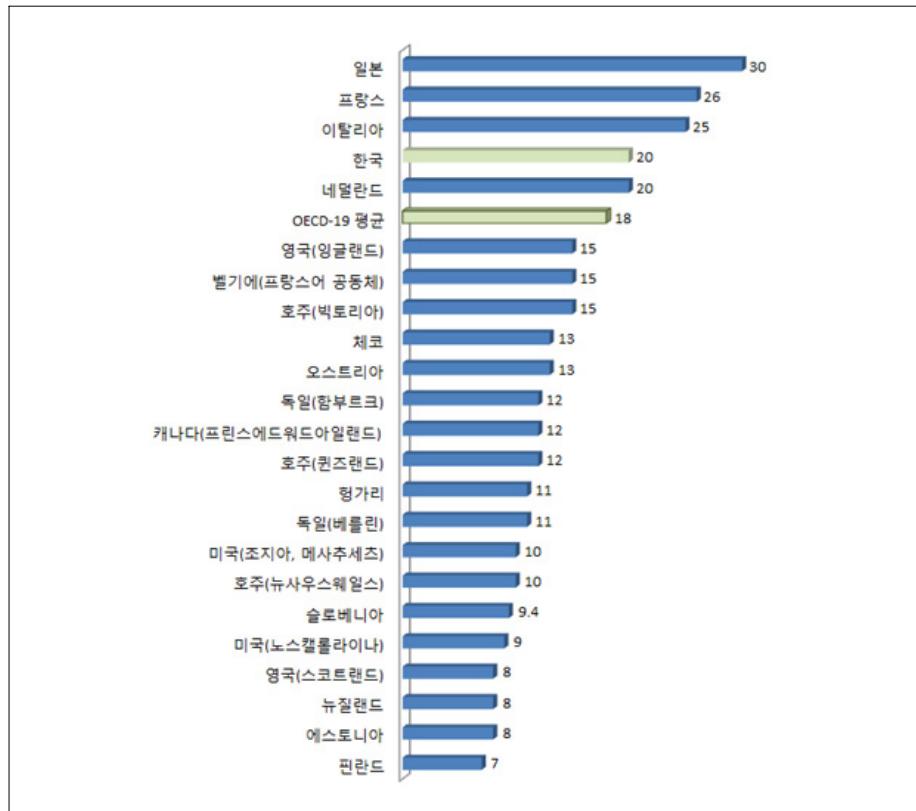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학급의 유아 수는 35명 이하를 원칙으로, 각 학급에 전임교사 1명이 있어야 함.</li> <li>필요 직원배치 수에 대한 산정방법 관련 규정은 없음.</li> </ul>
보육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사 수는 0세아 3명에 한해 1명, 1~2세아 6명에 한해 1명, 3세아 20명에 한해 1명, 4~5세아 30명에 한해 1명 이상으로 함. 평상시에는 2명 이상.</li> <li>필요 직원배치 수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연령별로 원아수를 배치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하고, 각각을 합계한 후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math display="block">\text{필요 직원배치 수} = (0\text{세아} \times 1/3) + \{(1\text{세아} + 2\text{세아}) \times 1/6\} + (3\text{세아} \times 1/20) + ((4\text{세아} + 5\text{세아}) \times 1/30)</math> </li> </ul>
유보제휴형 인정어린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시간 이용아: 유치원과 동일(1:35), 장시간 이용아: 보육소와 동일</li> <li>필요 직원배치 수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연령별, 이용 시간별에 따른 원아수를 배치 기준으로 나누어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하고, 각각을 합계한 후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li> </ul>

(표 II-3-5 계속)

유보제 휴식 인정 어린이원	$\text{필요 직원 배치 수} = (0세 아 \times 1/3) + (1세 아 + 2세 아) \times 1/6 + (3\sim 5세 단시간 이용 아 \times 1/35) + (3세 장시간 이용 아 \times 1/20) + (4\sim 5세 장시간 이용 아 \times 1/30)$
-------------------	--

자료: 김민지(2013). 일본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자와 국가의 과제. p. 64.

#### 4) OECD 국가의 교사 대 아동비율 규정



주: 1) 연령에 따라 교사 대 아동비율 규정이 다름; 독일(베를린)의 경우 1일 기준 5~7시간 수업에 참여하는 만3~6세 유아를 기초로 했으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 만4세 이상 유아를 기초로 했음(일본에서는 만 3세 1:20, 만 4~5세 이상 1:30임).

2) OECD-19 평균은 OECD 국가 차원에서 보고된 데이터로, 해당 19개국은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임.

자료: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www.oecd.org/edu/earlychildhood/toolbox](http://www.oecd.org/edu/earlychildhood/toolbox)).

[그림 II-3-1] OECD 회원국의 교사 1인당 최대 규정 유아 수(만3~5세)

OECD 19개국의 교사 대 아동비율(OECD, 2012)에 의하면, 유아반의 경우 평균적으로 교사 1인이 최대 18명의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는 핀란드의 유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이 1:7로, 교사 1인이 보육하는 유아 수가 가장 적었다.

### III. 유아반 편성 기준에 대한 요구 분석

본 장에서는 서울·경기지역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유아반의 편성 기준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았다. 요구를 파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유아반 운영 및 교사의 업무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는 유아반 운영 방식 및 교사의 근무환경과의 관계에서 적정 수준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초과보육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 반편성 기준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원장은 설립유형, 정원규모, 정원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교사는 설립유형, 담당 연령, 1일 업무시간, 초과근무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 1. 유아반 운영 및 유아반 교사의 업무 실태

##### 가. 유아반 운영 실태

###### 1) 운영시간 및 방식

어린이집의 평일 문 여는 시각과 문 닫는 시각 및 아동의 70%가 등원하고 하원한 시각을 연령별로 알아보았다(표 III-1-1, 표 III-1-2 참조). 그 결과, 어린이집의 문 여는 시각은 오전 8시 이전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의 70% 이상이 등원한 시각은 오전 9~10시 이전이 가장 많았다.

〈표 III-1-1〉 어린이집 개원시각 및 현원의 70% 이상이 등원한 시각

단위: %(개소)

구분	오전 8시 이전		오전 8~9시 이전		오전 9~10시 이전		오전 10시 이후		계
	개원 시각	70% 이상	개원 시각	70% 이상	개원 시각	70% 이상	개원 시각	70% 이상	
3세반	56.8	3.1	18.9	15.3	22.7	71.8	1.5	9.9	100.0(132)
4세반	56.6	1.1	18.2	18.9	22.2	69.5	3.0	10.5	100.0( 99)

(표 III-1-1 계속)

구분	오전 8시 이전		오전 8~9시 이전		오전 9~10시 이전		오전 10시 이후		계
	개원 시각	70% 이상	개원 시각	70% 이상	개원 시각	70% 이상	개원 시각	70% 이상	
5세반	56.8	1.2	17.0	18.8	23.9	69.4	2.3	10.6	100.0( 88)
3, 4세 혼합반	25.0	0.0	50.0	7.1	25.0	78.6	0.0	14.3	100.0( 16)
4, 5세 혼합반	50.0	5.9	29.4	5.9	20.6	76.5	0.0	11.8	100.0( 34)
3~5세 혼합반	66.7	16.7	0.0	33.3	33.3	50.0	0.0	0.0	100.0( 6)

어린이집이 문 닫는 시각은 오후 6시 이후가 가장 많았다. 아동의 70% 이상이 하원한 시각의 경우, 동일연령반과 3, 4세 혼합반은 오후 5~6시 이전이 많았으며, 4, 5세 혼합반과 3~5세 혼합반은 오후 6시 이후의 비율이 높았다.

〈표 III-1-2〉 어린이집 폐원시각 및 현원의 70% 이상이 하원한 시각

단위: %(개소)

구분	오후 4시 이전		오후 4~5시 이전		오후 5~6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계
	폐원 시각	70% 이상	폐원 시각	70% 이상	폐원 시각	70% 이상	폐원 시각	70% 이상	
3세반	0.0	8.6	6.1	25.0	17.4	38.3	76.5	28.1	100.0(132)
4세반	1.0	10.7	8.1	22.3	17.2	41.5	73.7	25.5	100.0( 99)
5세반	1.1	10.8	6.8	23.8	17.0	40.5	75.0	25.0	100.0( 88)
3, 4세 혼합반	0.0	14.2	18.8	35.7	18.8	42.9	62.5	7.1	100.0( 16)
4, 5세 혼합반	0.0	12.1	2.9	27.3	14.7	30.3	82.4	30.3	100.0( 34)
3~5세 혼합반	0.0	0.0	0.0	33.3	16.7	16.7	83.3	50.0	100.0( 6)

재원 아동 중 20~30%가 어린이집에 남아 있을 때의 보육 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여러 반을 통합해서 당직교사가 담당(50.7%)’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눠 당직교사 2인이 각 반을 담당’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당직교사가 저녁 시간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비율은 75.0%를 차지하였다.

〈표 III-1-3〉 20~30% 아동이 남아있을 경우 보육 운영 방법

운영 방법	단위: %
전체	100.0
담임교사가 하원할 때까지 담당	17.5
연령별로 교사 1인씩 담당	3.4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눠 당직교사 2인이 각 반 담당	24.3
여러 반을 통합해서 당직교사가 담당	50.7
시간연장반 교사가 담당	3.0
(누리)보조교사가 담당	1.1

## 2) 종일제 및 반일제 운영

종일제와 반일제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II-1-4〉와 같다.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85.8%가 종일제만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종일제와 반일제 모두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4.2%로 나타났다. 소재지와 설립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 지역보다 경기도 지역에서, 국공립보다 민간어린이집에서 반일제를 함께 운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II-1-4〉 종일제 및 반일제 운영 여부

구분	종일제만 운영	종일제와 반일제를 모두 운영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85.8	14.2	100.0(148)	
소재지				
서울특별시	97.5	2.5	100.0( 81)	
경기도(중소도시)	71.2	28.8	100.0( 59)	20.27(2)***
경기도(군지역)	75.0	25.0	100.0( 8)	
설립유형				
국공립	94.6	5.4	100.0( 56)	
사회복지법인/단체	88.9	11.1	100.0( 27)	7.79(2)*
민간	77.3	22.7	100.0( 66)	
정원 충족 여부				
정원 충족	86.4	13.6	100.0( 44)	0.01(1)
정원 미달	85.7	14.3	100.0(105)	

(표 III-1-4 계속)

구분	종일제만 운영	종일제와 반일제를 모두 운영	계	$\chi^2(df)$
정원규모				
39명 이하	85.0	15.0	100.0( 20)	
40~79명	87.9	12.1	100.0( 58)	0.32(2)
80명 이상	84.5	15.5	100.0( 71)	

\*  $p < .05$ , \*\*\*  $p < .001$

## 나. 유아반 교사의 업무 실태

조사대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1일 소요되는 총 업무시간(실질적인 유아보육 시간 및 보육과 관련된 기타 업무 시간으로 재택근무시간까지 포함)을 알아본 결과, 평균 약 11시간 정도를 업무에 할애하고 있었다. 하루에 ‘평균 12시간 이상’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3.6%를 차지하였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11시간 이상 업무한다고 응답한 사회복지법인/단체어린이집 교사의 비율이 65.8%로 가장 높았으며, 담당 연령별로는 11시간 이상 업무를 있다고 응답한 3, 4세 혼합반 교사의 비율이 55.6%로 가장 높았고, 4세반 교사의 비율도 53.3%를 차지하였다.

〈표 III-1-5〉 1일 평균 총 업무시간

구분	단위: %(명)					계
	9시간 미만	10시간 미만	1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전체	17.1	18.9	16.8	13.6	33.6	100.0(286)
설립유형						
국공립	13.4	16.4	14.9	16.4	38.9	100.0( 67)
사회복지법인/단체	8.6	11.4	14.3	22.9	42.9	100.0( 35)
민간	20.0	21.7	18.3	10.0	30.0	100.0(180)
담당 연령						
3세	19.7	17.8	14.9	13.9	33.7	100.0(101)
4세	11.6	20.8	14.3	10.4	42.9	100.0( 77)
5세	16.9	19.7	21.1	16.9	25.4	100.0( 71)
3, 4세 혼합반	11.1	22.2	11.1	22.2	33.4	100.0( 9)
4, 5세 혼합반	13.3	20.0	26.7	6.7	33.3	100.0( 15)
3~5세 혼합반	33.3	11.1	11.1	11.1	33.4	100.0( 9)

유아반 보육교사의 1일 업무를 분류하여 실질적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알아본 결과, 평균 약 7시간 22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 중 '7~8시간' 유아보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55.4%로 가장 높았다. 1일 소요되는 유아보육 시간은 담당반 교사 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 $\chi^2(df=8.751(3), p < .05)$ ), 담당반 교사가 1명인 경우에는 '7시간 이상' 보육을 하고 있는 비율(73.7%)이 높았던 반면, 교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5~8시간' 보육하고 있는 비율(77.6%)이 높았다.

〈표 III-1-6〉 1일 평균 유아보육 업무시간

단위: %(명)

구분	5시간 미만	5~6시간	7~8시간	9시간 이상	계
전체	4.4	25.5	55.4	14.8	100.0(271)
<b>설립유형</b>					
국공립	1.5	23.1	61.5	13.8	100.0( 65)
사회복지법인/단체	8.6	17.1	51.4	22.9	100.0( 35)
민간	4.8	28.0	53.6	13.7	100.0(168)
<b>담당 연령</b>					
3세	1.1	22.8	60.9	15.2	100.0( 92)
4세	2.7	22.7	56.0	18.7	100.0( 75)
5세	7.1	25.7	54.3	12.9	100.0( 70)
3, 4세 혼합반	12.5	37.5	37.5	12.5	100.0( 8)
4, 5세 혼합반	6.7	33.3	53.3	6.7	100.0( 15)
3~5세 혼합반	12.5	37.5	37.5	12.5	100.0( 8)
<b>담당반 교사 수</b>					
1명	3.6	22.7	58.7	15.0	100.0(230)
2명 이상	8.2	38.8	38.8	14.3	100.0( 53)
<b>1일 업무시간</b>					
9시간 미만	20.0	48.6	31.4	0.0	100.0( 35)
10시간 미만	3.8	47.2	49.1	0.0	100.0( 53)
11시간 미만	4.2	29.2	66.7	0.0	100.0( 48)
12시간 미만	2.6	15.4	71.8	10.3	100.0( 39)
12시간 이상	0.0	7.3	55.2	37.5	100.0( 96)

조사대상 보육교사들의 1일 평균 유아보육 업무시간을 제외한 기타 업무시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III-1-7>과 같다.

보육활동 준비 시간과 관련해서 전체 응답 중 '1~2시간 미만'으로 보육 활동

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다. 문서작성(보육일지, 관찰일지, 알림장 등) 소요시간에 있어서는 '1~2시간 미만'으로 문서작성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조사대상 보육교사들 중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으로 환경관리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5%로 가장 높았으며, '1~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1.6%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보육교사들의 담당업무(담임업무 외의 도서 담당, 물품/소모품 구입, 게시판 담당 등) 소요시간과 관련해서 전체 응답 중 74.6%가 '1시간 미만'으로 담당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부모면담과 부모관련 행사(부모참여 프로그램, 가족잔치, 간담회 등), 아동 관련 행사(어린이날, 현장학습 등) 및 평가인증·지도 점검 준비 등의 업무들을 대략 1일 소요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한 결과, 전체 응답 중 '1시간 미만'으로 해당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2%로 조사되었다.

〈표 III-1-7〉 1일 평균 유아보육을 제외한 기타 업무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
보육활동 준비 시간	29.7	48.4	16.1	5.9	100.0(273)
문서작성 시간	36.5	47.6	13.3	2.6	100.0(271)
청소 및 보육실 환경관리 시간	56.5	41.6	1.9	0.0	100.0(269)
담당업무 시간	74.6	22.7	2.3	0.4	100.0(256)
비정기적 행사 관련 업무시간	59.2	28.0	8.8	4.0	100.0(250)

조사대상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횟수를 알아본 결과, '월 평균 1~5 일'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가 전체의 75.7%를 차지하였다.

〈표 III-1-8〉 당직근무 횟수

단위: %(명)

구분	당직근무 없음	월 평균 1~5일	월 평균 6~10일	월 평균 11일 이상	계
전체	4.2	75.7	15.8	4.2	100.0(259)

(표 III-1-8 계속)

구분	당직근무 없음	월 평균 1~5일	월 평균 6~10일	월 평균 11일 이상	계
<b>설립유형</b>					
국공립	0.0	77.8	20.6	1.6	100.0( 63)
사회복지법인/단체	0.0	76.5	23.5	0.0	100.0( 34)
민간	6.3	74.8	12.6	6.3	100.0(159)
<b>담당 연령</b>					
3세	2.4	74.1	18.8	4.7	100.0( 85)
4세	5.4	79.7	13.5	1.4	100.0( 74)
5세	4.5	74.2	15.2	6.1	100.0( 66)
3, 4세 혼합반	14.3	71.4	14.3	0.0	100.0( 7)
4, 5세 혼합반	0.0	73.3	20.0	6.7	100.0( 15)
3~5세 혼합반	11.1	77.8	11.1	0.0	100.0( 9)
<b>1일 업무시간</b>					
9시간 미만	2.7	81.1	10.8	5.4	100.0( 37)
10시간 미만	8.3	79.2	10.4	2.1	100.0( 48)
11시간 미만	4.4	80.0	8.9	6.7	100.0( 45)
12시간 미만	5.1	66.7	23.1	5.1	100.0( 39)
12시간 이상	2.2	73.3	21.1	3.3	100.0( 90)

조사대상 보육교사들의 주말근무 횟수는 ‘월 평균 1일’이 64.9%로 가장 높았다. 주말근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3.7%를 차지하였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73.0%)과 민간어린이집(67.1%)의 경우 월 평균 1일 주말근무를 시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사회복지법인/단체어린이집에서는 주말근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8.5%로 월 평균 1일 주말근무(42.4%)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III-1-9〉 주말근무 횟수

구분	주말근무 없음	월 평균 1일	월 평균 2일	월 평균 3일 이상	단위: %(명)
					계
전체	23.7	64.9	9.0	2.4	100.0(245)
<b>설립유형</b>					
국공립	17.5	73.0	7.9	1.6	100.0( 63)
사회복지법인/단체	48.5	42.4	9.1	0.0	100.0( 33)
민간	20.5	67.1	9.6	2.7	100.0(146)

## 2.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에 대한 의견

### 가. 연령별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

보육환경에서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동과 개별화된 상호작용을 지속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관련이 있다. 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해 연령별로 원장과 교사의 의견을 파악하였다.

조사대상 원장들이 응답한 3세반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은 1:12 정도로, 김명순 외(2009)의 연구에서 원장이 응답한 3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인 1:13.3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설립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단체어린이집 원장들보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3세반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아 수가 더 많았다.

〈표 III-2-1〉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3세반(원장)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	단위: 명
				t/F
전체	12.46	3.03	100.0(146)	
<b>설립유형</b>				
국공립	11.75	2.49	100.0( 56)	
사회복지법인/단체	11.93	3.40	100.0( 27)	5.02**
민간	13.36	3.13	100.0( 64)	
<b>정원규모</b>				
39명 이하	11.89	3.88	100.0( 18)	
40~79명	12.24	3.15	100.0( 58)	1.00
80명 이상	12.83	2.69	100.0( 71)	
<b>정원 충족 여부</b>				
정원 충족	12.37	3.25	100.0( 43)	
정원 미달	12.53	2.96	100.0(104)	-0.28

\*\*  $p < .01$

원장 대상 심층면담에서 원장들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였으나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가 기본적인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반인 한 교실을 사용하고 보육료가 인상된다면 교사 대 아동비율이 1:12정도가 적당한 듯해요. 그 이유는 영아반에서 1:7비율로 있다가 갑자기 원아수가 많아지다 보니 유아와 학부모, 교사까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학기 초에는 적응시간이 있어 개인지도에 어려움이 있어요. (원장 A)

1:10에서 12정도가 좋은데... 만2세반의 1:7에 비교할 때도 그렇고 현재 우리 어린이집 상황을 볼 때도 몇 명이 결석하면 교사가 하루일과를 수월하게 잘 지내는 것 같고 아동간의 다툼도 덜해요. 교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숫자가 많으면 어렵죠. (원장 B)

전 현행 비율이 적절하다고 봐요. 보육의 질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교사1인당 보육아동 수가 적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을 고려하여야 해요. 아무리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적다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육의 질은 높아지지 않아요. (원장 C)

조사대상 보육교사들이 응답한 3세반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은 1:11 정도로 원장의 응답보다 1명이 적은 수치였다. 또한 김명순 외(2009)의 연구에서 교사가 응답한 3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인 1:13.8보다도 낮았다.

교사 응답의 경우, 설립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담당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3세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다른 연령 담당 교사보다 더 적은 수의 아동이 3세반에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3세를 포함한 혼합반을 담당할수록 적정 아동 수가 감소하였다.

〈표 III-2-2〉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3세반(교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	단위: 명
				t/F
전체	11.14	2.61	100.0(280)	
설립유형				
국공립	11.25	2.03	100.0( 67)	
사회복지법인/단체	11.11	2.75	100.0( 35)	0.06(2)
민간	11.13	2.79	100.0(174)	
담당 연령				
3세	10.91	2.64	100.0(101)	
4세	11.56	2.39	100.0( 73)	
5세	11.36	2.25	100.0( 70)	
3, 4세 혼합반	9.25	2.19	100.0( 8)	2.46(5)*
4, 5세 혼합반	11.80	3.63	100.0( 15)	
3~5세 혼합반	9.44	4.13	100.0( 9)	

(표 III-2-2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	t/F
<b>반정원 충족 여부</b>				
정원 충족	11.43	2.33	100.0(100)	
정원 미달	11.09	2.68	100.0(174)	1.05
<b>1일 업무시간</b>				
9시간 미만	10.90	2.90	100.0( 49)	
10시간 미만	11.34	2.46	100.0( 53)	
11시간 미만	11.38	2.60	100.0( 48)	0.31(4)
12시간 미만	11.00	2.31	100.0( 37)	
12시간 이상	11.09	2.69	100.0( 93)	
<b>초과근무 여부</b>				
초과	11.12	2.51	100.0(177)	
미초과	11.24	2.74	100.0( 93)	-0.35

\*  $p < .05$

교사 대상 심층면담에서도 만3세반의 비율 조정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교사들은 만3세반의 경우 만2세반에 비해 아동비율이 2배 정도 증가하여 운영되기에 이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면서 아동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만2세에서 만3세가 되면 1:7에서 1:15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나잖아요. 이건 아이들에게도 교사에게도 많이 부담이 돼요. (교사 A)

현재 3세반 인원은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는 교사의 개별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데 3세가 되면서 아이 수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교사와 아이 모두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교사 D)

만3세는 아직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소근육 발달과 여러 도구 사용이 미숙한 아이들도 많고 또한 아이들 간의 발달 차도 큰 시기라 아이들 수가 적어져야 해요. (교사 E)

조사대상 원장들이 응답한 4세반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은 1:15 정도로, 김명순 외(2009)의 연구에서 원장이 응답한 4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인 1:16.8보다도 낮았다.

설립유형과 정원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민간어린이집 및 정원규모가 8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적정 4세반 유아 수가 17명 정도로 가장 높았다.

〈표 III-2-3〉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4세반(원장)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	단위: 명
				t/F
전체	15.88	3.90	100.0(146)	
설립유형				
국공립	15.14	3.63	100.0( 56)	
사회복지법인/단체	14.96	4.09	100.0( 27)	4.09*
민간	16.89	3.83	100.0( 64)	
정원규모				
39명 이하	15.94	4.58	100.0( 18)	
40~79명	14.91	4.16	100.0( 58)	3.23*
80명 이상	16.63	3.30	100.0( 71)	
정원 충족 여부				
정원 충족	15.16	4.52	100.0( 43)	
정원 미달	16.16	3.57	100.0(104)	-1.43

\*  $p < .05$

조사대상 보육교사들이 응답한 4세반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은 1:14 정도로 원장의 응답보다 1명이 적은 수치였다. 또한 김명순 외(2009)의 연구에서 교사가 응답한 4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인 1:17.1보다도 낮았다.

교사 응답의 경우, 설립유형이나 담당 연령 및 업무시간 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4〉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4세반(교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	단위: 명
				t/F
전체	14.59	3.04	100.0(277)	
설립유형				
국공립	14.89	2.56	100.0( 66)	
사회복지법인/단체	15.26	3.09	100.0( 35)	1.66
민간	14.36	3.19	100.0(172)	
담당 연령				
3세	14.29	3.03	100.0( 97)	
4세	14.85	2.50	100.0( 75)	
5세	15.07	2.92	100.0( 70)	
3, 4세 혼합반	12.43	3.05	100.0( 7)	2.05
4, 5세 혼합반	14.93	3.83	100.0( 15)	
3~5세 혼합반	12.78	5.70	100.0( 9)	

(표 III-2-4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	t/F
<b>반정원 총족 여부</b>				
정원 총족	14.83	2.56	100.0( 98)	
정원 미달	14.57	3.20	100.0(173)	0.69
<b>1일 업무시간</b>				
9시간 미만	14.62	3.64	100.0( 47)	
10시간 미만	14.62	2.99	100.0( 52)	
11시간 미만	14.67	3.04	100.0( 48)	0.02
12시간 미만	14.58	2.73	100.0( 38)	
12시간 이상	14.52	2.91	100.0( 92)	
<b>초과근무 여부</b>				
초과	14.65	2.84	100.0(176)	
미초과	14.48	3.31	100.0( 91)	0.44

조사대상 원장들이 응답한 5세반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은 1:17 정도였다. 이는 김명순 외(2009)의 연구에서 원장이 응답한 5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인 1:17.9 보다 약간 낮은 수치였다.

설립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5세반 유아 수가 19명 정도로 가장 높았다.

〈표 III-2-5〉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5세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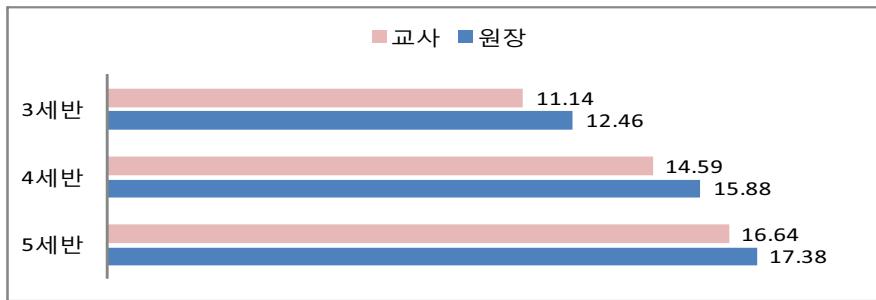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	단위: 명 t/F
전체	17.38	3.78	100.0(146)	
<b>설립유형</b>				
국공립	16.50	3.17	100.0( 56)	
사회복지법인/단체	15.78	4.06	100.0( 27)	9.75***
민간	18.83	3.66	100.0( 64)	
<b>정원규모</b>				
39명 이하	18.17	4.08	100.0( 18)	
40~79명	16.53	3.77	100.0( 58)	2.51
80명 이상	17.87	3.60	100.0( 71)	
<b>정원 총족 여부</b>				
정원 총족	16.91	4.12	100.0( 43)	
정원 미달	17.58	3.61	100.0(104)	-0.98

\*\*\*  $p < .001$

조사대상 보육교사들이 응답한 5세반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은 1:16 정도로 원장의 응답보다 낮은 수치였다. 김명순 외(2009)의 연구에서 교사가 응답한 5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인 1:16.6과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교사 응답의 경우, 설립유형이나 담당 연령 및 업무시간 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6〉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5세반(교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	단위: 명
				t/F
전체	16.64	3.19	100.0(276)	
설립유형				
국공립	16.33	2.52	100.0( 66)	
사회복지법인/단체	17.63	3.43	100.0( 35)	2.05
민간	16.56	3.35	100.0(171)	
담당 연령				
3세	16.64	3.16	100.0( 97)	
4세	16.78	2.86	100.0( 73)	
5세	16.92	2.81	100.0( 71)	1.17
3, 4세 혼합반	14.43	3.05	100.0( 7)	
4, 5세 혼합반	15.73	4.10	100.0( 15)	
3~5세 혼합반	15.78	6.44	100.0( 9)	
반정원 충족 여부				
정원 충족	16.72	2.84	100.0( 99)	0.07
정원 미달	16.69	3.31	100.0(171)	
1일 업무시간				
9시간 미만	16.49	3.62	100.0( 47)	
10시간 미만	16.77	3.25	100.0( 52)	
11시간 미만	16.92	3.17	100.0( 48)	0.18
12시간 미만	16.68	2.97	100.0( 37)	
12시간 이상	16.50	3.09	100.0( 92)	
초과근무 여부				
초과	16.63	3.06	100.0(175)	-0.29
미초과	16.75	3.37	100.0( 91)	



[그림 III-2-1] 연령별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교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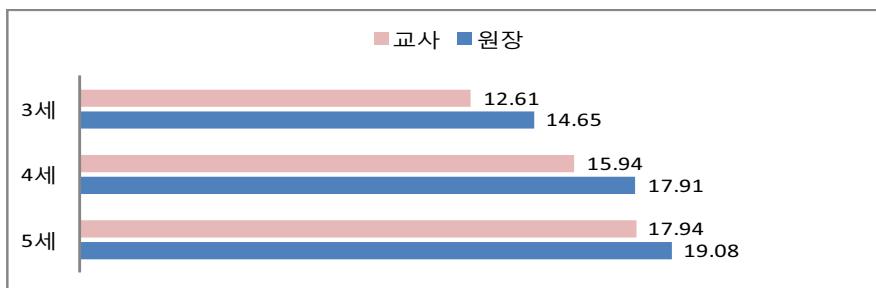
#### 나. 연령별 적정 집단크기

보육환경에서 집단의 크기는 같은 보육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령별 적정 집단크기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III-2-7>과 같다. 원장과 교사의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모든 연령에서 교사가 생각하는 보육실별 적정 유아 수가 원장이 생각하는 적정 유아 수보다 2명 정도 적었다.

&lt;표 III-2-7&gt; 연령별 적정 집단크기

구분			t	단위: 명
	원장	교사		
3세	14.65(3.90)	12.61(3.44)	5.19***	
4세	17.91(4.71)	15.94(4.18)	4.64***	
5세	19.08(4.81)	17.94(4.34)	2.50*	

\*  $p < .05$ , \*\*\*  $p < .001$



[그림 III-2-2] 연령별 적정 집단크기(교사, 원장)

## 다. 보조교사 1인 추가배치 시의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

한 반에 보육교사 1인과 보조교사 1인을 함께 배치할 경우, 연령별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같은 보육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유아 수)에 대해 원장과 교사의 의견을 파악한 결과는 <표 III-2-8>, <표 III-2-9>와 같다.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크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사가 원장보다 더 적은 유아 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보조교사 1인 추가배치 시의 연령별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

단위: 명

구분	원장		교사	<i>t</i>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3세	15.09(3.89)	13.82(3.51)		3.28**
4세	18.74(4.65)	17.39(3.89)		3.16**
5세	20.13(4.47)	19.20(3.94)		2.10*

\*  $p < .05$ , \*\*  $p < .01$

<표 III-2-9> 보조교사 1인 추가배치 시의 연령별 집단크기

단위: 명

구분	원장		교사	<i>t</i>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3세	17.00(4.62)	14.97(4.07)		4.63***
4세	20.71(5.22)	18.63(4.54)		4.23***
5세	21.92(5.26)	20.41(4.47)		3.09**

\*\*  $p < .01$ , \*\*\*  $p < .001$

## 라. 정교사 2인 배치 시의 적정 집단 크기

한 반에 정교사 2인을 배치할 경우, 적절한 집단크기(같은 보육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유아 수)에 대해 원장과 교사의 의견을 파악한 결과는 <표 III-2-10>과 같다. 정교사 2인을 배치 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교사가 원하는 집단크기는 원장이 원하는 집단크기보다 작았다.

〈표 III-2-10〉 정교사 2인 배치 시의 연령별 집단크기

구분	원장	교사	<i>t</i>	단위: 명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3세	19.63(5.49)	18.05(4.82)	2.92*	
4세	24.23(6.93)	22.55(5.62)	2.51*	
5세	25.66(6.91)	24.68(5.94)	1.52	

\*  $p < .05$

한 보육실에 정교사 2인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투담임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유아반 투담임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특히 별개의 2개 반이 한 보육실을 사용하는 구조일 경우, 각 반 담임선생님 사이의 의견 조율과 책임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랑 유아가 다른 것 같아요. 영아는 변수가 많고 자다가도 깨고 그러니까 투 담임이 필요한데 유아반 같은 경우는 단일반이 좋아요. 교사가 융합이 안 되면 화가 나죠 일단. 화가 나면 애들한테도 화를 내게 되죠. 저는 투담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10년 중에 5년 이상을 투담임을 했어요. 가장 문제는 부부와 같은 거예요. 치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옆 반 있을 때는 너무 좋은 선생님인데, 같은 반이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름대로 나도 교사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어디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사 D)

한 보육실에 투담임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한 보육실에 두 반이 섞여 있으면 이것이 지켜지기 어려워요. 교사마다 교육관과 티칭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일관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워요. 아이들 또한 긴 시간을 많은 아이들이 함께 있으면 안전성, 정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교사 E)

전 지금 제가 맡은 아이들과 파트너 선생님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따로 있기는 해요, 같은 교실에서. 그런데 모두 다 저희 반 아이들이라고 약간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실 환경을 준비하는 거라든지 주제별로 수업을 준비하는 거라든지 그게 미묘하게 여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도 물론 이 선생님에게 통용되는 것이 다른 선생님에게 통용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자고 저희는 이야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 때문에 이직하는 교사도 많아요.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교사들끼리 마찰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서 그만 두거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교사 B)

담임이 2명이면 미묘하게 갈등이 많은 편이에요. 아이들이 어느 한 선생님을 더 좋아하거나 부모들이 더 신뢰하는 교사가 생기기도 하고. 제일 큰 교사 아직 사유 중에 하나에요. (교사 A)

저희는 유아반 5개 반 중에 4개 반이 투담임인데 단 한 반도 사이가 좋은 반이 없어요. 저만 3세 단일반을 맡고 있는데 혼자서 힘들다가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게 낫구나 싶어요. (교사 C)

반면, 원장 대상 심층면담에서는 투담임제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투담임제 운영을 지지하는 의견과 유아반에서의 투담임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주장이 나뉘어졌다.

저희는 투담임제로 한 교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 교실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점과 교사의 갈등이 있는 단점도 있지만 수업 준비를 함께 할 수 있고 교사의 휴가나 병결이 있을 때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를 투입해도 수업이나 학부형 상당에 별로 지장이 없는 장점도 있어요. 교사들이 서로 다른 재능으로 유아들을 지도할 수도 있고, 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피드백을 주며 스스로의 자율장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다만 교사 간 약간의 긴장이나 경쟁심이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하죠. (원장 A)

영아의 경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아 3세~5세의 경우 어린이집 시설문제만 아니라면 투담임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요. 교사들도 투담임이라고 하면 지원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원장 C)

### 3. 초과보육에 대한 조정 요구 및 의견

#### 가. 연령별 초과보육 조정 요구

초과보육에 대한 의견을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연령별로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원장들의 33.6%가 3세반의 초과보육 금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사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43.6%가 3세반의 초과보육 금지를 지지한 반면,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34.4%는 현행 지침처럼 3명 허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조사대상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중에서 3세반의 초과보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6.2%로 나타났다.

〈표 III-3-1〉 3세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원장)

구분	초과보육 금지	1명만 허용	2명만 허용	3명 허용 (현재 유지)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33.6	23.1	22.4	21.0	100.0(143)	
<b>설립유형</b>						
국공립	43.6	23.6	21.8	10.9	100.0( 55)	
사회복지법인/단체	29.6	40.7	18.5	11.1	100.0( 27)	17.74(6)**
민간	26.2	14.8	24.6	34.4	100.0( 61)	
<b>정원규모</b>						
39명 이하	27.8	11.1	33.3	27.8	100.0( 18)	
40~79명	26.8	32.1	19.6	21.4	100.0( 56)	7.32(6)
80명 이상	40.6	18.8	21.7	18.8	100.0( 69)	
<b>정원 충족 여부</b>						
정원 충족	30.2	23.3	27.9	18.6	100.0( 43)	
정원 미달	35.0	23.0	20.0	22.0	100.0(100)	1.21(3)

\*\*  $p < .01$

조사대상 교사들의 72.2%가 3세반의 초과보육 금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의 응답과는 달리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초과보육 금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3-2〉 3세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교사)

구분	초과보육 금지	1명만 허용	2명만 허용	3명 허용 (현재 유지)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72.2	16.1	7.3	4.4	100.0(273)	
<b>설립유형</b>						
국공립	83.3	10.6	1.5	4.5	100.0( 66)	
사회복지법인/단체	74.3	17.1	5.7	2.9	100.0( 35)	7.98(6)
민간	68.0	17.2	10.1	4.7	100.0(169)	
<b>초과근무 여부</b>						
초과	73.0	16.1	6.9	4.0	100.0(174)	
미초과	70.0	16.7	7.8	5.6	100.0( 90)	0.46(3)

조사대상 원장들의 4세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과 관련하여 현행 지침처럼 3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7.3%로 가장 높았다. 설립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조사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32.7%가 4세반의 초과보육 금지를 지지한 반면,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41.0%는 현재의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3〉 4세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원장)

구분	초과보육 금지	1명만 허용	2명만 허용	3명 허용 (현재 유지)	단위: %(명)	
					계	$\chi^2(df)$
전체	24.5	23.8	24.5	27.3	100.0(143)	
<b>설립유형</b>						
국공립	32.7	29.1	18.2	20.0	100.0( 55)	
사회복지법인/단체	14.8	40.7	33.3	11.1	100.0( 27)	20.3(6)**
민간	21.3	11.5	26.2	41.0	100.0( 61)	
<b>정원규모</b>						
39명 이하	16.7	16.7	27.8	38.9	100.0( 18)	
40~79명	19.6	28.6	25.0	26.8	100.0( 56)	4.23(6)
80명 이상	30.4	21.7	23.2	24.6	100.0( 69)	
<b>정원 충족 여부</b>						
정원 충족	16.3	27.9	23.3	32.6	100.0( 43)	
정원 미달	28.0	22.0	25.0	25.0	100.0(100)	2.8(3)

\*\*  $p < .01$

조사대상 교사들의 62.1%가 4세반의 초과보육 금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의 응답과는 달리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초과보육 금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3-4〉 4세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교사)

구분	초과 보육 금지	1명만 허용	2명만 허용	3명 허용 (현재 유지)	단위: %(명)	
					계	$\chi^2(df)$
전체	62.1	21.2	9.3	7.4	100.0(269)	

(표 III-3-4 계속)

구분	초과 보육 금지	1명만 허용	2명만 허용	3명 허용 (현재 유지)	계	$\chi^2(df)$
<b>설립유형</b>						
국공립	65.2	22.7	6.1	6.1	100.0( 66)	
사회복지법인/단체	65.7	25.7	5.7	2.9	100.0( 35)	4.84(6)
민간	60.8	18.7	11.4	9.0	100.0(166)	
<b>초과근무 여부</b>						
초과	61.6	23.3	7.6	7.6	100.0(172)	
미초과	63.6	15.9	12.5	8.0	100.0( 88)	3.1(3)

조사대상 원장들의 5세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와 관련하여 현행 지침처럼 3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0.1%로 가장 높았다. 설립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조사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30.9%가 5세반의 초과보육 금지를 지지한 반면,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47.5%는 현재의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lt;표 III-3-5&gt; 5세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원장)

구분	초과 보육 금지	1명만 허용	2명만 허용	3명 허용 (현재 유지)	계	$\chi^2(df)$	단위: %(명)
전체	23.8	21.7	24.5	30.1	100.0(143)		
<b>설립유형</b>							
국공립	30.9	25.5	23.6	20.0	100.0( 55)		
사회복지법인/단체	14.8	37.0	37.0	11.1	100.0( 27)	22.08(6)**	
민간	21.3	11.5	19.7	47.5	100.0( 61)		

조사대상 교사들의 61.3%가 5세반 초과보육 금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의 응답과는 달리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초과보육 금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3-6〉 5세반 초과보육 조정 요구(교사)

구분	초과보육 금지	1명만 허용	2명만 허용	3명 허용 (현재 유지)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61.3	18.2	11.2	9.3	100.0(269)	
<b>설립유형</b>						
국공립	61.9	16.1	11.9	10.2	100.0(118)	
사회복지법인/단체	62.9	17.7	8.9	10.5	100.0(124)	10.23(6)
민간	43.5	34.8	21.7	0.0	100.0( 23)	
<b>초과근무 여부</b>						
초과	60.5	20.9	8.7	9.9	100.0(172)	
미초과	63.6	11.4	15.9	9.1	100.0( 88)	5.84(3)

## 나. 초과보육에 대한 의견

조사대상 원장들과 교사들로 하여금 초과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원장들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초과보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원아 수 변동 및 대기자 수 등에 따라 초과보육 허용, 총 정원에서 채워지지 않은 원아는 다른 반으로 초과보육 허용, 초과보육을 허용하지 않으면 민간어린이집은 사실상 운영이 어려움 등)이 가장 많이 나왔다. 반면, 보육교사들의 경우에는 보육의 질적 측면 저해 및 교사에게 가중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초과보육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교실 공간 확보, 수업의 질 및 아동과의 민감한 상호작용 저해, 유아의 안전상 부적합, 교사의 육체적·심적 부담, 현재의 인원도 보호하고 교육하기 버거움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원장과 교사 대상 심층면담에서도 교사들은 초과보육에 반대한 반면, 원장들은 초과보육을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였다.

개인적인 의견은 초과보육을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운영 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초과보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영아반은 어린이집을 선호하여 원아모집이 수월하지만 유아반은 유치원에서 방과후 활동이 많다보니 특별 활동을 위해 유치원을 선호해요. 어린이집에서는 방과후 활동이 제한되어 학부모가 원하는 만큼 진행이 어렵다보니 교사와 아동 비율조차 채워지지 않는 실정이에요. 경제적인 지원이나 보육료 인상이 있지 않으면 정원범위 안에서 초과보육은 불가피하죠. (원장 A)

초과보육을 하지 않고 지금보다 적은 비율로 보육을 하면 교사들과 아이들은 좋겠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아모집을 할 때 연령에 대비하여 모집되는 것이 아니고 적게 모집되는 반, 많이 모집되는 반이 있으므로 초과보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과보육을 하지 않으면 정원을 채울 수도 없고 현재의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으로 초과보육을 하는 것이 운영에 도움이 되죠. (원장 B)

초과보육 안하면 좋죠. 초과보육은 어린이집 유아보육료 대비 어린이집운영의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반별 정원을 2~3명씩 증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적정보육원가에 크게 못 미치기에 당분간은 초과보육을 해야만 해요. (원장 C)

#### 다. 보육교사 추가배치 방안

유아반에 비담임 보육교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할 때 담당했으면 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원장과 교사 모두 ‘반소속 보조교사’ 역할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담임 보육교사가 갖추었으면 하는 자격으로는 ‘보육교사 2급’을 가장 선호하였고, 경력으로는 ‘1~3년 경력자’를 가장 원했다. 비담임 보육교사의 활용시간에 대해 원장의 경우에는 1일 평균 ‘3~5시간’ 활용과 ‘6~8시간’ 활용이 동일하게 49.3%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의 경우에는 ‘3~5시간’ 활용(70.9%)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비담임 보육교사가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원장과 교사 모두 ‘연중 상시’ 배치되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표 IV-3-7〉 비담임 보육교사의 추가배치 시 선호하는 형태(원장, 교사)

단위: %(명)

구분	원장	교사
전체	100.0(147)	100.0(279)
<b>역할</b>		
반소속 보조	51.7	71.8
순환 보조	29.3	15.2
행정업무 담당	12.2	11.2
순환주임	6.8	1.8
<b>자격</b>		
보육교사 1급	22.6	16.1
보육교사 2급	56.2	64.5
보육교사 3급	21.2	19.4

(표 IV-3-7 계속)

구분	원장	교사
경력		
1년 미만	12.2	18.5
1~3년	71.4	75.0
4~5년	16.3	6.5
활용시간		
3시간 미만	1.4	5.0
3~5시간	49.3	70.9
6~8시간	49.3	24.1
필요시간		
신입영아 적응기 (3~4월)	19.2	11.2
연중 상시	76.7	79.1
기타 (휴가, 행사 시)	4.1	9.7

원장과 교사 심층면담에서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조교사 추가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활용에 있어서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간 중 교사의 손이 많이 필요한 시간대가 있어요. 아이들과의 생활 중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조교사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서 2시 사이엔 아이들의 다양하고 활동적인 교육시간이 많으므로 보조교사가 있으면 각 아이들의 요구사항이나 교육 진행시 아동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안전을 요하는 바깥활동 시 보조교사의 필요성은 더하고요. 보조교사는 누리과정의 아이들에겐 교육적인 수업 준비를 위하여 담임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해요. 제가 유치원에서 근무 할 당시에도 일과시간 후 종일반은 종일반 교사가 지도해서 그 이후 시간은 서류업무나 수업마무리 또 다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좋았어요. (교사 E)

현장학습 갈 때나 유아가 아파서 격리가 필요할 때 유아 혼자 둘 수 없으므로 함께 해야 할 것 같고 보육실 정리나 수업준비 보조를 담당하고... 그러나 교사 교육은 담임들과 똑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조교사 활용시간은 오전 오후 자유선택시간과 오후 통합반이 이뤄질 때 배치해야 하고요. 특히 시간연장반이 있어서 늦은 밤까지 연장담당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을 위해서 이 때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지원해주는 것은 정말 좋죠. 근데 누리과정 보조교사는 공고를 내어 채용하고는 있으나 보육을 전공한 교사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채용에 어려움이 많아요. (원장 A)

누리교사가 있어서 반별 수업진행 도움과 행정업무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누리교사는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요. 담임 수당 지원이 없다보니 8시간 근무하셔도 급여가 작으며, 그렇다고 원에서 지원하기는 부담이 크죠. 4시간~6시간 교사를 채용은 하나 급여가 작다보니 찾은 이직이 생겨 운영에 어려움이 있네요. 제도적으로 보안이 필요해요. (원장 C)

#### 4. 동일연령반 및 혼합반 편성

동일연령반과 혼합반 편성에 대한 선호를 알아본 결과, 원장(60.8%)과 교사(70.7%) 모두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연령반 편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 동일연령반과 혼합반 편성에 대한 의견(원장, 교사)

구분	연령에 따라 동일연령반과 혼합반 편성	연령에 상관없이 혼합반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연령반	단위: %(명)
				계
원장	35.1	4.1	60.8	100.0(148)
교사	27.4	1.9	70.7	100.0(270)

연령에 따라 동일연령반과 혼합반으로 다르게 편성하거나 연령에 상관없이 혼합반 편성이 좋다고 응답한 원장과 교사에게 혼합반 편성 시 적절한 혼합연령을 질문한 결과, '3, 4세' 혼합반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III-4-2〉 혼합반 편성 시 적절한 혼합연령

구분	3, 4세반	4, 5세반	3~5세반	단위: %(명)
				계
원장	63.2	52.6	5.3	100.0(57)
교사	66.7	40.0	5.3	100.0(75)

혼합반 운영 시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을 파악한 결과는 <표 III-3-3>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모든 연령의 혼합반 구성에서 교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의 수가 원장이 생각하는 아동의 수보다 적었다.

〈표 III-4-3〉 혼합반 운영 시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원장, 교사)

구분	3, 4세반	4, 5세반	3~5세반	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원장	13.71(3.03)	17.50(4.09)	15.23(3.66)	100.0(57)
교사	12.99(2.50)	16.99(3.15)	14.17(3.01)	100.0(75)

교사 대상 심층면담에서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혼합반 편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다만, 실제적으로 혼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에는 경력 있는 교사가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혼합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혼합반을 맡은 적이 있는데 수업 준비를 두 세트를 했어요, 처음에는 연령별로 해서 소외되면 좀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보는 시선도 좀 그렇고 해서. 같은 주제에 난이도 조절해서 따로 해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죠. (교사 A)

혼합반 운영은 굉장히 어려워요. 엄마들도 싫어하고 수업할 때도 힘들고. 애들은 월령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철학이 있더라도 쉽지 않아요. 엄마가 딸 둘을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개월 수도 틀리고,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여러 명 있는 거잖아요. (교사 C)

4, 5세를 혼합반으로 많이 하는데, 5세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4세 같은 경우는 많이 놀아야 하잖아요. 5세 엄마들은 애기들과 있어서 따라한다고 힘들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열악한 곳 말고는 혼합연령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국공립이나 법인 이런 곳은 거의 없고, 민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애들이 없으니까. (교사 D)

혼합반은 다양한 연령이 함께 있어야 하므로 각 연령에 맞는 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이 꼭 진행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의 혼합반은 반대예요. 혼합반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로서 이는 아이들 간의 모델링의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간에 진정한 배려심과 사회성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되고요. 잘 준비된 환경과 교사라면 충분히 좋은 점들도 있어요. (교사 E)

## 5. 동년도 출생을 기준으로 한 반편성 원칙

### 가. 연령별 반편성에 대한 의견

2013년 보육사업안내 규정에 의하면,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월 1일~동년도 12월 31일 출생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 편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의견을 파악한 결과, '동년도 출생아만 같은 반으로 구성해야 한다'에 원장(46.6%)과 교사(52.6%)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5-1〉 1, 2월생 아동의 반편성에 대한 의견(원장, 교사)

단위: %(명)

구분	상위연령반 편성 없이 동년도 출생아만	전년도 상위연령반에 편성하였던 1, 2월생만	현 기준처럼 부모의 요구에 따라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되 교사의 판단에 따라	계
원장	48.6	5.6	24.3	21.5	100.0(148)
교사	52.6	4.4	14.8	28.2	100.0(270)

#### 나. 1, 2월생 아동의 동년도 출생아반 편성에 대한 만족도

1, 2월생 아동의 동년도 출생아반 편성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원장과 교사 모두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는 응답률이 불만족한다(불만족+매우 불만족)는 응답보다 높았다.

〈표 III-5-2〉 1, 2월생 아동의 동년도 출생아반 편성에 대한 만족도(원장, 교사)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원장	2.1	9.9	38.0	38.0	12.0	100.0(148)
교사	0.7	3.7	43.2	42.4	10.0	100.0(270)

교사 대상 심층면담에서도 1, 2월생 아동을 동년도 출생아반에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며, 부모들도 동년도 출생아반에서 보육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월생은 동년도 출생아반에 있어야 해요. 4세반인 아이가 5세반으로 가면 정말 기준 이하로 떨어져요. 4세반에 있기 때문에 개가 돌보이는 거지, 5세반으로 가면 아니에요. (교사 D)

친구관계가 괴여요. 친구와 형님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거든요. (교사 A)

어머님들이 전에는 먼저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많이 바랬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동일 연령대 아이들 중에서 우수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동의를 하면 된다고 하나, 요즘에는 그렇게 안하시고 똑같은 또래에서 앞서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가서 자기 아이가 전년도 3월 생 친구랑 비교하면 10달 차이가 이상이 나는 건데, 굳이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고 동일 연령에서 우리 아이가 월등히 뛰어난 아이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교사 B)

## 6. 소결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유아반 운영 현황, 보육교사의 업무실태 및 반편성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70% 이상이 등원한 시각은 ‘오전 9~10시’가 가장 많았고, 아동의 70% 이상이 하원한 시각은 주로 ‘오후 5~6시’였다. 재원 아동 중 20~30%가 어린이집에 남아 있을 때는 ‘여러 반을 통합해서 당직 교사가 담당(50.7%)’하거나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눠 당직교사 2인이 각 반을 담당(24.3%)’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85.5%가 종일제만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서울 지역보다는 경기도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반일제를 함께 운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둘째, 교사의 업무 실태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보육교사들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1일 총 시간은 약 11시간(재택근무시간 포함)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은 1일 평균 7시간 22분이었으며, 그 이외의 약 3시간 38분 정도를 보육 활동 준비, 문서작성, 보육환경 관리 및 기타업무 등에 할애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보육교사들 중 75.7%의 교사들이 월 평균 1~5일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64.9%의 교사들이 월 평균 1일의 주말근무를 하고 있었다.

셋째, 연령별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에 있어서 3세반의 경우 원장은 1:12, 교사는 1:11 정도였으며, 4세반의 경우 원장은 1:15, 교사는 1:14 정도였고, 5세반의 경우 원장은 1:17, 교사는 1:16 정도로 모든 연령에서 교사가 생각하는 적정

비율이 원장이 생각하는 적정비율보다 낮았다. 연령별 집단크기(같은 보육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수)에서도 교사가 생각하는 집단크기가 원장이 생각하는 집단크기보다 작았다. 보조교사 1인을 추가배치하거나 정교사 2인이 한 보육실에 배치될 경우의 집단크기에 있어서도 보육실별 교사가 생각하는 적정 유아 수는 원장이 생각하는 적정 유아 수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만3세 이상 유아반의 초과보육에 대한 조정 요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원장들의 경우에는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초과보육 금지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던 반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현재의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고(3명 허용)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보육교사들의 경우에는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에서 초과보육 금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초과보육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견에 있어서도 원장들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초과보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교사들은 보육의 질적 측면 저해 및 교사에게 가중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초과보육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섯째, 유아반에 비담임 보육교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할 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1~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 2급의 반소속 보조교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중상시 1일 평균 3~5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보조교사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조사대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연령반 편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대상 심층면담에서도 교사들은 수업 진행 및 연령별 아동의 발달을 고려했을 때 동일연령반으로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일곱째, 연령별 반편성에 있어 조사대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모두 상위연령반 편성 없이 동년도 출생아만으로 반을 편성하는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1, 2월생 아동을 동년도 출생아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 IV. 정책 제언

### 1. 어린이집 유아반 편성 기준 개선 방향

어린이집 만3세 이상 유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 대 아동비율이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가능한 단기 방안으로 현재 다소 과중한 업무량과 긴 근무시간에 따른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줌으로 현행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현행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배치를 잘 활용하여 교사를 지원함으로서 질 높은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 교실에서 두 명의 담임이 유아를 담당하는 팀티칭 형태일 때, 교사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과 교사 역할의 교대 및 순환 등으로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돋고 배려할 수 있는 근무 환경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또한 보조교사 배치와 같은 추가 인력 지원이 도움이 되는 방안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하여 2명의 교사가 근무 시간을 달리하여 보육할 수 있는 2교대 근무 및 대체교사의 상시적인 활용이 가능한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교사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은 아동 보육의 질과 무관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과보육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초과보육 규정을 준수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설정을 감안하여 적정 표준보육비의 산정 및 실현 등을 통하여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보육료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2월 출생아의 경우 동년도 출생아와 같은 반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현행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 원칙은 이미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착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개선 방향으로 제안하였던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금지, 1, 2월 출생아의 동년도 출생아와 같은 반으로 구성하는 원칙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다음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 2.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개선 방안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개선 방안으로 먼저 만3세 이상 유아반의 편성 기준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교사 역할 배치 등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초과보육 금지 및 1, 2월 출생아의 동년도 출생아와 같은 반으로 구성하는 원칙 등에 관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 가. 유아반 편성 기준 모색

유아 중심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유아반 편성 기준 모색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경우,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과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유지하면서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방안

본 연구를 통하여 연령별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에 관한 원장 및 교사들의 의견 조사 결과, 만3세의 경우 원장은 1:12, 교사는 1:11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장과 교사 모두 현행의 1:15 보다 더 적은 비율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4세와 만5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장 및 교사는 각각 (4세-1:15, 1:14), (5세-1:17, 1:16)으로 현행의 1:20보다 더 적은 비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3세의 경우 현재 3세 반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사나 3세를 포함한 혼합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다른 연령 담당 교사에 비해 더 적은 아동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이 교사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아동 수를 원하였지만 원장이나 교사 모두 현행 교사 대 아동비율보다 더 낮은 비율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에는 현행의 기준이 높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행 기준보다 최소 3명 정도는 더 적은 수의 아동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행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에 대한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만3세의 경우 만2세반에서의 교사 한명이 아동 7명을 돌보는 환경에서 만3세에서는 교사 한명이 15명의 아동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다소 급변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1년이 경과함에 따라 2배 이상의 아동이 급증하게 됨으로서 교사와 아동이 서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본 조사 결과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다른 연령 구간에 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이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만3세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현행 비율보다 더 낮추어져야 한다. 만3세는 1:12~1:13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4세 이상의 경우도 1:17~1:18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 좋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만3세 1:7, 만4~5세 1:8로 유지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만3세 이상 1:8 또는 1:13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아주 낮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다.

## 2) 현행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유지하면서 추가 인력 배치 방안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에 따른 제반 사항 마련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야기될 혼란을 막기 위해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추가 인력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만3세 이상 유아반의 편성 기준 모색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방안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학급 운영 및 교사 역할에 관하여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나. 유아반 편성 기준 모색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운영 방안

만3세 이상 유아반의 편성 기준 모색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운영 방안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 1) 단기 방안

##### 가) 보조교사 배치 지원

만3세 이상의 유아반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교사를 제공한다. 보조교사의 경우는 하루 3~5시간 정도로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한다. 본 조사 결과 원장은 비단임 보육 교사의 3~5시간 활용과 6~8시간 활용을 동일하게 50% 정도 원하였던 반면, 교사의 경우에는 3~5시간 활용에 관

한 의견이 71% 정도로 가장 많았다. 교사 심층 면접을 통해서도 교사들은 장시간 보조를 원하기보다는 일정 시간만을 원했는데 그 이유로 학급 담당에 대한 주된 책임 소재여부로 인한 갈등을 피하고자 하였다. 교사들은 보육에 대한 책임은 담임교사가 담당하기를 원하였고 보육 이외의 행정적인 일이나 청소 등의 기타 업무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원하였다.

보조교사의 경우, 학급에서의 역할에 따라 자격 구비에 대한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 시간동안 수업과 관련된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행정 및 청소와 같은 기타 업무를 지원해 줄 인력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3급 자격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고 있는 여성 인력이나 경력이 단절되었던 유자격자 중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배치를 잘 활용하는 방안도 이와 연동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장들이 있다. 예를 들면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경우에도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갖춘자를 요구함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할은 기타업무와 같은 일이 많아 고용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을 단계화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육업무 보조에서부터 청소와 같은 일까지 역할 구분에 따른 자격요구를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조교사 활용 방안에 관하여 현장에서의 요구를 수용하여 보다 구체화함으로 인한 교사 지원을 통하여 질 높은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토대로 다음에서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하였다. 누리과정 보조교사나 보조교사 채용 시, 두 가지 트랙으로 하도록 한다. 첫 번째 트랙은, 수업 이외의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한 명의 보조교사가 3~5시간 정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2개 학급에 해당하는 관련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형태이거나, 또는 오전에는 한 학급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오후에는 어린이집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 등으로 채용 시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주며, 그러한 역할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두 번째 트랙으로는 누리과정 수업 진행과 관련한 보조 업무 담당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두 학급을 담당하도록 하는 형태로 채용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육교사 2

급 자격을 요구한다.

#### 나) 팀티칭 활용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두 명의 교사가 동일연령 아동을 한 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팀티칭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어린이집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과 한 교사의 부재 시 아동들이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팀티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교사들 간의 갈등이 깊어져서 교사 이직 사유가 되기도 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아동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팀티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교사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의 차이를 두어 교사의 근무시간을 줄여주고, 주교사와 부교사의 역할을 한 달 주기로 교대하게 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돋고 배려할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는 같은 반에서 팀티칭하기를 원하는 상대교사를 교사들끼리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서로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어려운 점을 잘 보완하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팀티칭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도 보조교사 배치와 같은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 2) 중장기 방안

#### 가) 순환근무 장려

대부분의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이다.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의 2교대로 나누어서 모든 수업과 활동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각 근무 시의 수업 및 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내용을 각 교사들이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나 연계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짧은 근무시간으로 교사의 피로감이 덜 할 것이고,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교사들이 질 높은 교사-아동 상호작용을 위한 수업 준비 및 개별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의 수업 내용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보육의 질적 개선 및 증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 나)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지원 제공 및 상시대체교사제

교사들의 교육 연수 및 개인사에 이르는 교사 부재가 예상될 시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교사나 아동들이 보다 편안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교사 수급이 대체적으로 대도시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지역에 따른 대체교사 수급이 어려운 곳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교사에게 다양한 교육 및 연수 등의 기회 제공과 개인 복지의 혜택은 궁극적으로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기적으로는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더 많은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 다. 초과보육 금지 원칙 준수

본 조사 결과를 통하여 모든 연령의 유아반 교사들의 과반수 이상은 초과보육 금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3세 유아의 초과보육 금지 의견이 72% 정도로 가장 많았다. 반면, 원장들의 경우에는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어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원장 보다 현행 3명의 초과보육 허용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조사대상 원장들과 교사들로 하여금 초과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던 결과, 원장들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초과보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원아 수 변동 및 대기자 수 등에 따라 초과보육 허용, 총 정원에서 채워지지 않은 원아는 다른 반으로 초과보육 허용, 초과보육을 허용하지 않으면 민간어린이집은 사실상 운영이 어려움 등)이 많았다. 반면, 교사들은 보육의 질적 측면 및 교사에게 가중될 업무 부담을 이유로 초과보육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교실 공간 확보, 수업의 질 및 아동과의 민감한 상호작용 저해, 유아의 안전상 부적합, 교사의 육체적·심적 부담, 현재의 인원도 보호하고 교육하기 버거움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실정을 감안한 적정 표준보육비의 산정을 통한 시행이 되어야 한다. 민간 어린이집에서의 중도 퇴소 아동의 발생, 퇴소 아동에 따른 충원의 어려움, 총 정원은 미달되었는데 특정 연령의 아동만 많아서 반별 정원을 초과함으로서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 수의 불안정성은 어린이집 재정 문제와 연결되어 어린이집의 수입은 감소하는데 반하여 교사 인건비는 그대로 지출되어야 함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적정 보육료의 현 실화를 바탕으로 초과보육 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다 수의 교사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바라고 있고, 학계 및 전문가들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초과보육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라. 동일연령반 위주의 반 구성

본 조사 결과 원장과 교사는 모두 가능하면 동일연령반으로 구성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혼합반으로 구성되었을 시, 교사들은 연령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은 경우라면 교사가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것이 원활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사가 연령에 맞게 각기 다른 수준의 교육 내용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면 동일연령반 구성으로 교사의 수업준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는 혼합반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하향 조정 및 혼합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교수 지침 제공 등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 마. 1, 2월생에 대한 반편성 기준

동년도 출생아와 같은 반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원장과 교사 모두에게 가장 많았고, 동년도 출생아반 편성에 대한 만족한다는 의견이 불만족 한다는 의견 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1, 2월 출생아의 경우 동년도 출생아와 같은 반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현행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 원칙은 이미 현장에서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도록 추진한다.

## 참고문헌

- 권미경·김정숙·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명순·김혜금·이윤선·안현숙·이나리·김의정·이수빈(2009).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 합리화 방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 김민지(2013). 일본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자와 국가의 과제. 2013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은영·권미경·조혜주(2012).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과운영 및 교사의 직무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도남희·조은경·조혜주(2011). 육아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현미(2005). 보육교사의 직무환경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주(2008). 업무환경과 정서노동이 보육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1991~1998). 보육사업지침.
- 보건복지부(1999~2013).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이미화·구미진(2006).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 여성가족부.
- 심숙영(1999). 근무여건과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소진이 유아교사의 이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20(3), 339-349.
- 이기심(2010). 평가인증제도가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2011).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실태 개선을 위한 고찰. 한국보육학회, 11(3), 27-44.

-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립·도남희·권미경·양미선·손창균·김경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서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여종일·엄지원(2012). 2013~2017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 육아정책연구소.
- Department of Education(2013). Consultation on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staff deployment(<https://www.education.gov.uk/publications/standard/publicationDetail/Page1/DFE-00002-2013>).
- Korjenevitch, M., & Dunifon, R. (2010). Child care center quality and child development.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 NAEYC(2013). New Guidance on NAEYC Accreditation Criteria.
-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online version([www.oecd.org/edu/earlychildhood/toolbox](http://www.oecd.org/edu/earlychildhood/toolbox)).
- Pianta, R. C., Barnett, W. S., Burchinal, M., & Thornburg, K. R. (2009). The Effects of Preschool Education What We Know, How Public Policy Is or Is Not Aligned With the Evidence Base, and What We Need to Know.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10(2), 49-88.

## 부 록

---

---

부록 1. 연도별 반편성 지침(1991~2013년)

부록 2. 어린이집 원장용 설문지

부록 3. 어린이집 교사용 설문지

부록 4.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기타 업무시간  
(유아보육시간 제외)



## 부록 1. 연도별 반편성 지침(1991~2013년)

<부록 표 1-1> 연도별 반편성 지침(1991~2013년)

연도	설립유형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현성 기준	비고
		(교사)	(보육사)			
1991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 3세 이상 30인당 1인 (보육사) - 3세 미만 7인당 1인 - 3세 이상 15인당 1인				- 1991. 1 영유아보육법 제정 - 1991.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가정어린이집	(보육사) *아동 10인 이상의 경우 - 3세 미만 5인당 1인 - 3세 이상 10인당 1인 *아동 10인 미만인 경우, 1인				
1992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 3세 미만 7인당 1인 - 3세 이상 15인당 1인				
	가정어린이집	- 3세 미만 5인당 1인 - 3세 이상 영유아 1인				
1993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 3세 미만 7인당 1인 - 3세 이상 15인당 1인				
	가정어린이집	- 3세 미만 5인당 1인 - 3세 이상 영유아 1인				
1994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20인당 1인				
	가정어린이집	- 3세 미만 5인당 1인 - 3세 이상 영유아 1인		- 3세 미만 3인 이상 초과 시마다 1인 증원		

(부록 표 1-1. 계속)

연도	설립유형	교사 대 이동비율	초과보육	현성 기준	비고
1995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20인당 1인 - 3세 미만 5인당 1인 - 3세 이상 혼유아 1인 - 2세 미만 5인당 1인	- 3세 미만 5인 이상 초과 시마다 1인 증원		
1996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20인당 1인 (40인당 유치원 교사 1인) - 촉하이동 30인당 1인 - 청에이동 5인당 1인 (10인당 특수교사 1인)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1인 (触하이동 20인까지)			
1997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20인당 1인 (40인당 유치원 교사 1인) - 촉하이동 30인당 1인 - 청에이동 5인당 1인 (10인당 특수교사 1인)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1인 (触하이동 20인까지)			
1998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20인당 1인 (40인당 유치원 교사 1인) - 촉하이동 30인당 1인 - 청에이동 5인당 1인 (10인당 특수교사 1인)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1인 (触하이동 20인까지)			
1999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 미체시 - 미체시			

(부록 표 1-1. 계속)

연도	설립유형	교사 대 이동비율	초과보육	현성 기준	비고
2000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20인당 1인 - 취학아동 30인당 1인 - 장애아동 55인당 1인 (10인당 특수교사 1인)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1인 (취학아동 20인까지)			
2001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20인당 1인 - 취학아동 30인당 1인 - 장애아동 55인당 1인 (10인당 특수교사 1인)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20인당 1인 (취학아동 20인까지)			
2002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20인당 1인 - 장애아동 55인당 1인 (10인당 특수교사 1인)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20인당 1인 (취학아동 20인까지)			
2003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20인당 1인 - 취학아동 30인당 1인 - 장애아동 55인당 1인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20인당 1인 (취학아동 20인까지)			<p>1) 보육시설은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2) 보육시설은 가능한 영아반에 유아반이 동일 배율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 영어전담 보육시설 등 정부 특수 시설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별도로 반별성 비율을 적용함.</p>

(부록 표 1-1. 계속)

연도	설립유형	교사 대 이동비율	초과보육	현성 기준	비고
2004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이상 20인당 1인 - 쥐학아동 30인당 1인 - 장애아동 5인당 1인 -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이상 20인당 1인	- 2세 미만 5인당 1인 - 3세 이상 24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이상 3세 미만 7인당 1인 - 3세 이상 3세 미만 15인당 1인 - 4세 이상 미취학 20인당 1인 - 쥐학아동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차별소지자)	1) 보육시설은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2) 보육시설은 가능한 영아반에 유아반이 둘 일 배율이 대도록 편성하여야 함. - 영아전담 보육시설 등 정부 특수 시책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별도로 반편성 비율을 적용함.	- 2004. 1 영유아보육법 전문 개정
2005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 1세 미만 3인당 1인 - 1세 이상 24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이상 3세 미만 7인당 1인 - 3세 이상 미취학 20인당 1인 - 쥐학아동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차별소지자)	- 1세 미만 3인당 1인 - 1세 이상 24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이상 3세 미만 7인당 1인 - 3세 이상 4세 미만 15인당 1인 - 4세 이상 미취학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쥐학아동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차별소지자)	1) 보육시설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보육 확성화를 위하여 영아반 비율을 높게 편성하도록 지도해야 함. 3)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인가증(신고증) 상의 총정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3세 이상만 보육할 수 없음. - 영아전담 보육시설 등 정부 특수 시책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별도로 반편성 비율을 적용함.	- 교사 대 이동비율 변경
2006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 1세 미만 3인당 1인 - 1세 이상 24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이상 3세 미만 7인당 1인 - 3세 이상 4세 미만 15인당 1인 - 4세 이상 미취학 20인당 1인 - 쥐학아동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차별소지자)	- 1세 미만 3인당 1인 - 1세 이상 24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이상 3세 미만 7인당 1인 - 3세 이상 4세 미만 15인당 1인 - 4세 이상 미취학 20인당 1인 - 쥐학아동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차별소지자)	1) 보육시설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보육 확성화를 위하여 영아반 비율을 높게 편성하도록 지도해야 함. 3)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인가증(신고증) 상의 총정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3세 이상만 보육할 수 없음.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음

(부록 표 1-1. 계속)

연도	설립유형	교사 대 이동비율	초과보육	현성 기준	비고
2007	유형구분 없음	- 1세 미만 3인당 1인 - 1세 이상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이상 3세 미만 7인당 1인 - 3세 이상 4세 미만 15인당 1인 - 4세 이상 미취학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여야 함) - 취학이동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반 당 1인 초과보육 가능(체반 체외)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은 교사 대 이동비율의 특례인정	1) 연령별 반편성 기준일은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과 동일하게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 (1, 2월생은 전년도 31~동년도 228 출생 이와 함께 반편성). 2) 보육시설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보육성화를 위하여 영아반 비율을 높게 편성하도록 지도해야 함.	- 연령별 반편성 기준 조항 추가
2008	유형구분 없음	- 1세 미만 3인당 1인 - 1세 이상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이상 3세 미만 7인당 1인 - 3세 이상 4세 미만 15인당 1인 - 4세 이상 미취학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여야 함) - 취학이동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1~2체반은 2인, 3체 이상반은 3인 초과보육기능(체반 체외)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은 교사 대 이동비율의 특례인정	1) 연령별 반편성 기준일은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과 동일하게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 (1, 2월생은 전년도 31~동년도 228 출생 이와 함께 반편성). - 단, 1, 2월생의 경우 보호자신청에 의해 동년도 출생아반에 편성 가능 2) 보육시설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 1, 2월생 연령별 반편성 기준 조항 변경
2009	유형구분 없음	- 1세 미만 3인당 1인 - 1세 이상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이상 3세 미만 7인당 1인 - 3세 이상 4세 미만 15인당 1인 - 4세 이상 미취학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여야 함) - 취학이동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1~2체반은 2인, 3체 이상반은 3인 초과보육기능(체반 체외)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은 교사 대 이동비율의 특례인정	1)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이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이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전년도 성위연령반에 헌정서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 가능 2) 보육시설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3) 반별 정원은 교사 대 이동비율을 준수해야 함.	- 1, 2월생 연령별 반편성 기준 조항 변경

(부록 표 1-1. 계속)

연도	설립유형	교사 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현성 기준	비고
2010	유형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 미만 3인당 1인</li> <li>- 1세 이상 2세 미만 5인당 1인</li> <li>- 2세 이상 3세 미만 7인당 1인</li> <li>- 3세 이상 4세 미만 15인당 1인</li> <li>- 4세 이상 미취학 2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여야 함)           </li></ul> <p>(유아·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아동 20인당 1인</li> <li>- 장애아 3인당 1인</li> </ul> <p>(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1~2세반은 2인 3세 이상반은 3인 초과보육가능(0세반은 제외)</li> <li>- 도서·벽지·놓어춘지역 등을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 인정</li> </ul>	<p>1)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이(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이)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1, 2월생 아동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만0세반에 되는 날부터 보호자 신청에 의해 이월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li> <li>- 보육시설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 만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li> </ul> <p>2)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해야 함.</p> <p>3)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해야 함.</p>	
2011	유형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 미만 3인당 1인</li> <li>- 1세 이상 2세 미만 5인당 1인</li> <li>- 2세 이상 3세 미만 7인당 1인</li> <li>- 3세 이상 4세 미만 15인당 1인</li> <li>- 4세 이상 미취학 2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여야 함)           </li></ul> <p>(유아·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아동 20인당 1인</li> <li>- 장애아 3인당 1인</li> </ul> <p>(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초과보육 인정범위)</li> <li>- 1세 미만 해당 없음.</li> <li>- 1세 이상 2세 미만 7인당 1인</li> <li>- 2세 이상 3세 미만 9인당 1인</li> <li>- 3세 이상 4세 미만 19인당 1인</li> <li>- 4세 이상 미만 23인당 1인</li> </ul>	<p>1)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이(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이)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1, 2월생 아동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보호자 신청에 의해 이월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li> <li>- 취학유아동은 만5세이반으로 편성 가능</li> <li>- 보육시설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 만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li> </ul> <p>2)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해야 함.</p> <p>3)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해야 함.</p>	

(부록 표 1-1. 계속)		연도	설립유형	교사 대 이동비율	초과보육	현성 기준	비고
2012	유형구분 없음	- 1세 미만 3인당 1인 - 1세 이상 2세 미만 5인당 1인 - 2세 이상 3세 미만 7인당 1인 - 3세 이상 4세 미만 15인당 1인 - 4세 이상 5세 미만 20인당 1인 (유아·취학어동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p>- 보육과정 및 이동 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검안하여 별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p> <p>(초과보육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 미만 해당 없음</li> <li>- 1세 이상 2세 미만 7인당 1인</li> <li>- 2세 이상 3세 미만 19인당 1인</li> <li>- 3세 이상 4세 미만 23인당 1인</li> <li>- 4세 이상 5세 미만 7인당 1인</li> </ul>	<p>1) 연령별 반현성은 동년도 출생이(동년도 1.1~ 동년도 12.31 출생이)를 함께 반현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1, 2월생 이동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 가능</li> <li>- 2012년 4월 1일 이후 어린이집 경우에도 1, 2 월생의 신규 상위연령반 편성을 금지, 기준 상위연령반 현성 이동도 가능한 한 동년도 출생아반에 반현성을 하도록 권고</li> <li>- 만0세반에 편성된 이동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보호자 신청에 의해 의월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이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li> <li>- 취학유예이동은 만5세이반으로 편성 가능</li> </ul> <p>2) 어린이집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 세 영아반, 만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 반현성시 교사 대 이동비율을 준수</p>	<p>3) 연령별 반현성은 동년도 출생이(동년도 1.1~ 동년도 12.31 출생이)를 함께 반현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1, 2월생 이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3년 3월 반현성시 또는 신규입소시 에 한하여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li> <li>- 만0세반에 편성된 이동은 출생일 기준 만12 개월이 되는 날부터 보호자 신청에 의해 의월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이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li> <li>- 취학유예이동은 만5세이반으로 편성 가능</li> </ul> <p>2) 어린이집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 세 영아반, 만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 반현성시 교사 대 이동비율을 준수</p>		
		<p>- 보육과정 및 이동 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검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p> <p>(초과보육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 미만 3인당 1인</li> <li>- 1세 이상 2세 미만 5인당 1인</li> <li>- 2세 이상 3세 미만 7인당 1인</li> <li>- 3세 이상 4세 미만 15인당 1인</li> <li>- 4세 이상 5세 미만 20인당 1인 (유아·취학어동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li> </ul>	<p>1) 연령별 반현성은 동년도 출생이(동년도 1.1~ 동년도 12.31 출생이)를 함께 반현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1, 2월생 이동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3년 3월 반현성시 또는 신규입소시 에 한하여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li> <li>- 만0세반에 편성된 이동은 출생일 기준 만12 개월이 되는 날부터 보호자 신청에 의해 의월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이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li> <li>- 취학유예이동은 만5세이반으로 편성 가능</li> </ul> <p>2) 어린이집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 세 영아반, 만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 반현성시 교사 대 이동비율을 준수</p>				
2013	유형구분 없음	<p>- 보육과정 및 이동 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검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p> <p>(초과보육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 미만 3인당 1인</li> <li>- 1세 이상 2세 미만 5인당 1인</li> <li>- 2세 이상 3세 미만 7인당 1인</li> <li>- 3세 이상 4세 미만 15인당 1인</li> <li>- 4세 이상 5세 미만 20인당 1인 (유아·취학어동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li> </ul>	<p>1) 연령별 반현성은 동년도 출생이(동년도 1.1~ 동년도 12.31 출생이)를 함께 반현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1, 2월생 이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3년 3월 반현성시 또는 신규입소시 에 한하여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li> <li>- 만0세반에 편성된 이동은 출생일 기준 만12 개월이 되는 날부터 보호자 신청에 의해 의월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이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li> <li>- 취학유예이동은 만5세이반으로 편성 가능</li> </ul> <p>2) 어린이집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 세 영아반, 만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 반현성시 교사 대 이동비율을 준수</p>				

[자료] 보건복지부(1991-1998), 보육사업지침; 보건복지부(1999-2013), 보육사업 안내.

## 부록 2. 어린이집 원장용 설문지

Gallup 2013-164-000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개선방안 연구(원장용)

□ □ □ - 2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는 절대로 옳은 답이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생각하신 후,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1., 2. 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박무의

담당연구원 이창수

실시연구원 천선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663

연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기관명						
총 인가 정원	명			현원	명	
소재지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중소도시) 3. 경기도(군지역)					
기관유형	1. 국공립 2. 사회복지법인 3. 법안단체 등 4. 민간					
소유·임대 형태	1. 자가 2. 자가(용자) 3. 전세 임대 4. 월세 임대 5. 무상 6. 기타(____)					
총 종사자 수	1. 원장	2. 보육교사	3. 보조교사	4. 사무원	5. 츄사부	6. 기타(____)
	명	명	명	명	명	명
보육실 총 면적	평 / 또는 m <sup>2</sup>					
평가인증여부	1. 예		서울형 인증 여부		1. 예 2. 아니오	
연령별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3, 4세	만 4, 5세	만 3~5세
반 수	개	개	개	개	개	개
원아 수	명	명	명	명	명	명
반 운영시간 (평균 등원 하원) *통합보육시간 포함 (24시간 기준)	등원	~	~	~	~	~
	하원	~	~	~	~	~
현원의 70%가 이용하는 시간대 (24시 기준)	~	~	~	~	~	~
교사 수	담임	명	명	명	명	명
	보조	명	명	명	명	명
토요일 운영 횟수	월 평균 _____ 회 운영					

보육 운영 관련

- 문1) 귀 원은 종일제와 반일제를 구분하여 운영하십니까?

  - 1. 종일제만 운영 → **[문2]로 갈 것**
  - 2. 반일제만 운영
  - 3. 종일제와 반일제를 모두 운영

문1-1) 반일제를 운영하신다면, 몇 시까지 운영하십니까?

\_\_\_\_\_ 시 (24 시 기준)

- 문2) 귀 원에서는 전체 이동 중 20-30%가 어린이집에 남아 있을 때, 그 이동들에 대한 보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1. 담임교사가 하원할 때까지 담당
  2. 연령별로 교사 1인씩 담당
  3.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눠 당직교사 2인이 각 반 담당
  4. 여러 반을 통합해서 당직교사가 담당
  5. 기타 (작을 것 : \_\_\_\_\_)

교사 대 아동비율 관련

- 문3)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개선이 필요 합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보육실 면적 규정	1	2	1	2	1	2
2) 교사 대 아동비율						
만0세	1:3					
만1세	1:5					
만2세	1:7					
만3세	1:15					
만4세 이상	1:20					
3) 초과보육 인정범위						
만0세	해당 없음					
만1세	1:7명 이내					
만2세	1:9명 이내					
만3세	1:18명 이내					
만4세 이상	1:23명 이내					

- 문4) 유아 보육의 질을 고려할 때 귀하가 생각하는 적절한 교사  
대 이동비율과 집단 크기를 연령대별로 기록해 주십시오.

구 분	적절한 교사 대 이동비율 (교사 : 아동)	같은 보육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유아 수
만3세반	1 : ( )	( )명
만4세반	1 : ( )	( )명
만5세반	1 : ( )	( )명

- 문5) 한 반에 보육교사 1인과 보조교사 1인을 함께 배치할 경우, 귀하가 생각하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 크기  
를 여별대별로 기록해 주십시오

구 분	적절한 교사 대 이동비율 (교사 : 이동)	같은 보육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유아 수
만3세반	1 : ( )	( )명
만4세반	1 : ( )	( )명
만5세반	1 : ( )	( )명

- 문6) 비단임 보육교사가 추가로 배정된다면 귀하는 다음 중 어느 형태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선호하는 형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비담임 보육교사	보기 항목
문6-1) 역할	1. 반 소속 보조 2. 순환 주임(원감) 3. 순환 보조 4. 행정업무 담당
문6-2) 자격	1. 보육교사 1급 2. 보육교사 2급 3. 보육교사 3급
문6-3) 경력	1. 1년 미만 2. 1~3년 3. 4~5년
문6-4) 활용시간	1. 3시간 미만 2. 3~5시간 3. 6~8시간
문6-5) 필요기간	1. 신입영아의 적응기(3~4월) 2. 연중상시 3. 기타(휴가, 행사시)

- 문7) 한 반에 정교사 2인이 배치될 경우, 귀하는 연령별 집단 크기로 몇 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령대 별로 기록해 주십시오.

학급	같은 보육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유아 수
만 3세반	( )명
만 4세반	( )명
만 5세반	( )명

## 초과 보육

- 문8) 귀하는 초과보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령대별로 기록해 주십시오.

구 분	초과보육 인원은 현재보다			
	초과보육 금지	1명만 허용	2명만 허용	3명 허용 (현재 유지)
만 3세반	1	2	3	4
만 4세반	1	2	3	4
만 5세반	1	2	3	4

- 문8-1) 귀하게께서는 초과보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생각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동일연령반과 혼합반 편성

- 문9) 유아반의 경우, 귀하는 동일연령반과 혼합반 중 어떤 학급 구성이 아동에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연령에 따라 동일연령반과 혼합반으로 다르게 편성하는 것이 좋다
- 2. 연령에 상관없이 혼합연령반이 좋다
- 3.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연령반이 좋다 → 문10으로 갈 것

- 문9-1) 혼합연령 반 편성시 연령을 같이 묶어도 좋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만 3, 4세
2. 만 4, 5세
3. 만 3, 4, 5세

- 문9-2) 혼합연령 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현행 보육사업안내 기준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 아동)
만3, 4세반	1:15	1 : ( )
만4, 5세반	1:20	1 : ( )
만3-5세반	1:15	1 : ( )

## 1, 2월생 아동의 반편성 기준

문10) 현재 보육사업기준에 따르면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월 1일~동년도 12월 31일 출생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 편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동년도 출생아만 같은 반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전년도에 상위연령반에 편성하였던 1, 2월생만** 상위연령반으로 구성해야 한다.
3. 현 기준처럼 1, 2월생은 **부모의 요구에 따라** 동년도 출생아반이나 상위연령반 편성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4. 1, 2월생은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되 **교사의 판단에 따라** 동년도 출생아반이나 상위연령반 편성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5. 기타 (책을 것 : \_\_\_\_\_)

- 문11) 1, 2월생 아동의 동년도 출생아반 편성 기준에 대한 해당 자녀의 부모님과 귀하의 만족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부모	1	2	3	4	5
원장	1	2	3	4	5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면 접 후 기록

응답자이름				
응답자주소				
응답자 연락처	1. 일반전화 ( ) - ( ) - ( ) 지역번호 국 번호 2. 휴대폰 ( ) - ( ) - ( )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부터 ____ 시 ____ 분까지 (____ 분간) (반드시 적어 주세요)			
조사 일시				
협조 정도	1. 상	2. 중	3. 하	
응답신뢰도	1. 상	2. 중	3. 하	
면접원이름		ID		

Supervisor	검증원

### 부록 3. 어린이집 교사용 설문지

Gallup 2013-164-000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개선방안 연구(교사용)

- 1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바꿔섬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는 절대로 응답이나 틀림 없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생각하신 후,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마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어

담당연구원 이 창 수

실사연구원 천 선 옥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663

<b>기 관 명</b>				
<b>소재지</b>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중소도시)	3. 경기도(군지역)	
<b>기관유형</b>	1. 국공립	2. 사회복지법인	3. 법인·단체 등	4. 민간
<b>담당반 연령</b>	1. 만 3세	2. 만 4세	3. 만 5세	4. 만 3, 4세 혼합반
	5. 만 4, 5세 혼합반	6. 만 3~5세 혼합반		
<b>담당 유아 수</b>	명	<b>담당 반 교사 수</b>	명	
<b>반 운영시간</b>	(시작) :	~ (끝) :	(24시 기준, 평균 등원·하원)	*통합보육시간 포함
<b>직책 (복수응답 가능)</b>	1. 원감	2. 주임 교사	3. 담임 교사	4. 비담임(시간제) 교사
<b>교사연령</b>	만 세			
<b>최종학력</b>	1. 고졸	2. 전문대졸	3. 대졸	4. 석사 이상
<b>최종전공</b>	1. 이동(복지/가족)학	2. 보육학	3. 사회복지학	4. 유아교육학
<b>소지자격 (복수응답 가능)</b>	1. 보육교사 1급	2. 보육교사 2급	3. 보육교사 3급	4. 기타(적을 것 : _____)
<b>경력</b>	총 년 개월	/ 현 어린이집 년 개월		
<b>1일 근무시간</b>	1일 평균 시간 (내규에 의해 정해진 근무시간)			
<b>1일 소요되는 업무시간 (평균 시간)</b>	1. 유아 보육	평균	시간	분
	2. 보육 활동 준비	평균	시간	분
	3. 문서작성(보육일지, 관찰일지, 알림장 등)	평균	시간	분
	4. 청소, 보육실 환경 관리	평균	시간	분
	5. 담임업무 외의 담당업무(예: 도서 담당, 물품/소모품 구입, 개시판 담당 등)	평균	시간	분
	6. 기타(부모 면담, 행사·감사 준비 등) (대략 1일 소요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평균	시간	분
	합계	총	시간	분
<b>당직근무 횟수</b>	월 평균 일(주중)	<b>주말 근무 횟수</b>	월 평균 일(주말)	
<b>시간외수당 유무</b>	1. 있음	2. 없음		
<b>고용형태</b>	1. 정규직	2. 계약직	3. 시간제	

보육 운영 관련

문1) 귀 원은 종일제와 반일제를 구분하여 운영하십니까?

- └ 1. 종일제만 운영 → 문2)로 갈 것
  - └ 2. 반일제만 운영
  - └ 3. 종일제와 반일제를 모두 운영

문1-1) 반일제를 운영하신다면, 몇 시까지 운영하십니까?

\_\_\_\_\_시 (24시 기준)

문2) 귀 원에서는 전체 아동 중 20-30%가 어린이집에 남아 있을 때, 그 아동들에 대한 보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1. 담임교사가 하원할 때까지 담당
  2. 연령별로 교사 1인씩 담당
  3.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눠 당직교사 2인이 각 반 담당
  4. 여러 반을 통합해서 당직교사가 담당
  5. 기타 (적을 것 : \_\_\_\_\_)

교사 대 아동비율 관련

문3)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개선이 필요 합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보육실 면적 규정	1	2	1	2	1	2
2) 교사 대 아동비율						
만0세	1:3					
만1세	1:5					
만2세	1:7					
만3세	1:15					
만4세 이상	1:20					
3) 초과보육 인정범위						
만0세	해당 없음					
만1세	1:7명 이내					
만2세	1:9명 이내					
만3세	1:18명 이내					
만4세 이상	1:23명 이내					

문4) 유아 보육의 질을 고려할 때 귀하가 생각하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과 집단 크기를 연령대별로 기록해 주십시오.

구 분	적절한 교사 대 이동비율 (교사 : 아동)	같은 보육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유아 수
만3세반	1 : ( )	( )명
만4세반	1 : ( )	( )명
만5세반	1 : ( )	( )명

문5) 한 반에 보육교사 1인과 보조교사 1인을 함께 배치할 경우, 귀하가 생각하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집단 크기  
를 여력대별로 기록해 주십시오

구 분	적절한 교사 대 이동비율 (교사 : 이동)	같은 보육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유아 수
만3세반	1 : ( )	( )명
만4세반	1 : ( )	( )명
만5세반	1 : ( )	( )명

문6) **비답임 보육교사가 추가로 배정된다면 귀하는 다음 중 어느 형태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선호하는 형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비담임 보육교사	보기 항목
문6-1) 역할	1. 반 소속 보조 2. 순환 주임(원감) 3. 순환 보조 4. 행정업무 담당
문6-2) 자격	1. 보육교사 1급 2. 보육교사 2급 3. 보육교사 3급
문6-3) 경력	1. 1년 미만 2. 1~3년 3. 4~5년
문6-4) 활용시간	1. 3시간 미만 2. 3~5시간 3. 6~8시간
문6-5) 필요기간	1. 신입영아의 적응기(3~4월) 2. 연중상시 3. 기타(휴가, 행사시)

문7) 한 반에 정교사 2인이 배치될 경우, 귀하는 연령별 집단 크기로 몇 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령대 별로 기록해 주십시오.

학급	같은 보육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유아 수
만 3세반	( )명
만 4세반	( )명
만 5세반	( )명

초과 보육

문8) 귀하는 초과보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련대별로 기록해 주십시오

구 분	초과보육 인원은 현재보다			
	초과보육 금지	1명만 허용	2명만 허용	3명 허용 (현재 유지)
만 3세반	1	2	3	4
만 4세반	1	2	3	4
만 5세반	1	2	3	4

문8-1) 귀하께서는 초과보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생각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동일연령반과 혼합반 편성

문9) 유아반의 경우, 귀하는 동일연령반과 혼합반 중 어떤 학급 구성이 아동에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연령에 따라 동일연령반과 혼합반으로 다르게 편성하는  
것이 좋다
  - 2. 연령에 상관없이 혼합연령반이 좋다
  - 3.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연령반이 좋다 → 문10으로 갈 것

문9-1) 혼합연령반 편성시 연령을 같이 묶어도 좋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만 3, 4세
  - 만 4, 5세
  - 만 3, 4, 5세

문9-2) 혼합연령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현행 보육사업안내 기준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 아동)
만3, 4세반	1:15	1 : ( )
만4, 5세반	1:20	1 : ( )
만3-5세반	1:15	1 : ( )

### 1. 2월생 아동의 반편성 기준

문10) 귀하의 담당 반에 있는 1, 2월생 아동 수와 그중에서  
상위연령반으로 편성된 아동의 수를 기록해  
주시시오(없을 경우, 0명으로 기재).

1, 2월생 아동 수 ( )명	상위연령반 편성 아동 수 ( )명
---------------------	-----------------------

문11) 현재 보육사업기준에 따르면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월 1일~동년도 12월 31일 출생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 2월생 이동으로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3월 반편성이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 편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동년도 출생아만 같은 반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전년도에 상위연령반에 편성하였던 1, 2월생만 상위연령반으로 구성해야 한다.
  3. 현 기준처럼 1, 2월생은 부모의 요구에 따라 동년도 출생아만이나 상위연령반 편성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4. 1, 2월생은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되 교사의 판단에 따라 동년도 출생아만이나 상위연령반 편성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5. 기타 (적을 것 : \_\_\_\_\_)

문12) 1, 2월생 아동의 동년도 출생아반 편성 기준에 대한 해당 자녀의 부모님과 귀하의 만족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부모	1	2	3	4	5
교사	1	2	3	4	5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면전후기록

Supervisor	검증원

#### 부록 4.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기타 업무시간(유아보육시간 제외)

〈부록 표 4-1〉 1일 평균 보육활동 준비 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
전체	29.7	48.4	16.1	5.9	100.0(273)
<b>설립유형</b>					
국공립	30.3	59.1	10.6	0.0	100.0( 66)
사회복지법인/단체	31.4	42.9	22.9	2.9	100.0( 35)
민간	29.8	45.2	16.1	8.9	100.0(168)
<b>담당 연령</b>					
3세	31.9	43.6	17.0	7.4	100.0( 94)
4세	30.7	45.3	18.7	5.3	100.0( 75)
5세	32.9	51.4	12.9	2.9	100.0( 70)
3, 4세 혼합반	12.5	50.0	12.5	25.0	100.0( 8)
4, 5세 혼합반	20.0	60.0	20.0	0.0	100.0( 15)
3~5세 혼합반	12.5	75.0	0.0	12.5	100.0( 8)
<b>담당반 교사 수</b>					
1명	30.5	46.4	17.3	5.9	100.0(230)
2명 이상	34.7	49.0	14.3	2.0	100.0( 53)
<b>1일 업무시간</b>					
9시간 미만	45.9	45.9	2.7	5.5	100.0( 37)
10시간 미만	44.4	53.7	0.0	1.9	100.0( 54)
11시간 미만	44.7	42.6	12.8	0.0	100.0( 47)
12시간 미만	28.2	51.3	20.5	0.0	100.0( 39)
12시간 이상	8.3	47.9	30.2	13.5	100.0( 96)

〈부록 표 4-2〉 1일 평균 문서작성 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
전체	36.5	47.6	13.3	2.6	100.0(271)
<b>설립유형</b>					
국공립	27.3	62.1	10.6	0.0	100.0( 66)
사회복지법인/단체	25.7	51.4	20.0	2.9	100.0( 35)
민간	42.2	41.0	13.3	3.6	100.0(166)
<b>담당 연령</b>					
3세	34.0	50.0	13.8	2.1	100.0( 94)
4세	45.3	38.7	13.3	2.7	100.0( 75)
5세	36.2	53.6	7.2	2.9	100.0( 69)
3, 4세 혼합반	25.0	25.0	50.0	0.0	100.0( 8)
4, 5세 혼합반	26.7	53.3	13.3	6.7	100.0( 15)
3~5세 혼합반	28.6	42.9	28.6	0.0	100.0( 7)
<b>담당반 교사 수</b>					
1명	36.5	47.5	13.2	2.7	100.0(230)
2명 이상	34.7	49.0	14.3	2.0	100.0( 53)
<b>1일 업무시간</b>					
9시간 미만	61.1	33.3	5.6	0.0	100.0( 36)
10시간 미만	58.5	37.7	3.8	0.0	100.0( 53)
11시간 미만	57.4	40.4	2.1	0.0	100.0( 47)
12시간 미만	28.2	69.2	2.6	0.0	100.0( 39)
12시간 이상	8.3	53.1	31.3	7.3	100.0( 96)

〈부록 표 4-3〉 1일 평균 청소 및 보육실 환경 관리 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계
전체	56.5	41.6	1.9	100.0(269)
<b>설립유형</b>				
국공립	52.4	44.4	3.2	100.0( 63)
사회복지법인/단체	60.0	37.1	2.9	100.0( 35)
민간	56.9	41.9	1.2	100.0(167)
<b>담당 연령</b>				
3세	67.0	31.9	1.1	100.0( 91)
4세	50.7	46.7	2.7	100.0( 75)
5세	50.7	46.4	2.9	100.0( 69)
3, 4세 혼합반	25.0	75.0	0.0	100.0( 8)
4, 5세 혼합반	60.0	40.0	0.0	100.0( 15)
3~5세 혼합반	62.5	37.5	0.0	100.0( 8)
<b>담당반 교사 수</b>				
1명	55.7	42.0	2.3	100.0(230)
2명 이상	58.3	41.7	0.0	100.0( 53)
<b>1일 업무시간</b>				
9시간 미만	83.3	16.7	0.0	100.0( 36)
10시간 미만	84.3	15.7	0.0	100.0( 51)
11시간 미만	63.8	36.2	0.0	100.0( 47)
12시간 미만	61.5	35.9	2.6	100.0( 29)
12시간 이상	26.0	69.8	4.2	100.0( 96)

〈부록 표 4-4〉 1일 평균 담임업무 외의 담당업무 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
전체	74.6	22.7	2.3	0.4	100.0(256)
<b>설립유형</b>					
국공립	78.7	18.0	3.3	0.0	100.0( 61)
사회복지법인/단체	76.5	23.5	0.0	0.0	100.0( 34)
민간	72.6	24.2	2.5	0.6	100.0( 157)
<b>담당 연령</b>					
3세	76.7	19.8	3.5	0.0	100.0( 86)
4세	70.4	28.2	1.4	0.0	100.0( 71)
5세	74.6	22.4	3.0	0.0	100.0( 67)
3, 4세 혼합반	62.5	37.5	0.0	0.0	100.0( 8)
4, 5세 혼합반	84.6	15.4	0.0	0.0	100.0( 13)
3~5세 혼합반	75.0	12.5	0.0	12.5	100.0( 8)
<b>담당반 교사 수</b>					
1명	75.2	21.9	2.4	0.5	100.0(230)
2명 이상	72.7	25.0	2.3	0.0	100.0( 53)
<b>1일 업무시간</b>					
9시간 미만	83.9	16.1	0.0	0.0	100.0( 31)
10시간 미만	95.7	4.3	0.0	0.0	100.0( 46)
11시간 미만	93.5	6.5	0.0	0.0	100.0( 46)
12시간 미만	84.6	15.4	0.0	0.0	100.0( 39)
12시간 이상	47.9	44.7	6.4	1.1	100.0( 94)

〈부록 표 4-5〉 1일 평균 비정기적 행사 관련 업무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
전체	59.2	28.0	8.8	4.0	100.0(250)
<b>설립유형</b>					
국공립	57.4	32.8	4.9	4.9	100.0( 61)
사회복지법인/단체	57.1	22.9	17.1	2.9	100.0( 35)
민간	60.9	26.5	8.6	4.0	100.0(151)
<b>담당 연령</b>					
3세	60.2	31.3	6.0	2.4	100.0( 83)
4세	54.2	25.0	16.7	4.2	100.0( 72)
5세	68.2	22.7	4.5	4.5	100.0( 66)
3, 4세 혼합반	33.3	50.0	16.7	0.0	100.0( 6)
4, 5세 혼합반	53.8	38.5	0.0	7.7	100.0( 13)
3~5세 혼합반	50.0	37.5	12.5	0.0	100.0( 8)
<b>담당반 교사 수</b>					
1명	59.6	26.1	9.4	4.9	100.0(230)
2명 이상	55.6	37.8	6.7	0.0	100.0( 53)
<b>1일 업무시간</b>					
9시간 미만	81.5	3.7	11.1	3.7	100.0( 27)
10시간 미만	85.7	14.3	0.0	0.0	100.0( 49)
11시간 미만	76.1	19.6	2.2	2.2	100.0( 46)
12시간 미만	68.6	22.9	5.7	2.9	100.0( 35)
12시간 이상	26.9	48.4	17.2	7.5	100.0( 93)

연구보고 2013-23

---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개선방안 연구  
-유아반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63-1292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78-7 93330